

정책연구보고 2022-02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및 실태분석 -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을 대상으로 -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정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강보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연구진

연구 책임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정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강보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22 - 02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및 실태분석
-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을 대상으로 -

발행일 2022년 07월

발행인 대표이사 권한대행 남윤수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경기도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보는 생활시설이 법인장애인거주시설 이외에도 개인 운영 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과 개인으로 구별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2011년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분포한 개인운영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발전적 정책방안을 도출한 경험이 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2022년 현재 어떠한 변화를 겪고 달라졌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개선안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2022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85개소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복지재단은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고 경기도 장애인법정시설협회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 경기도와 시·군은 정책적으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행정적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다양한 의견 제시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권한대행 **남윤수**

요약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은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미신고 시설부터 법인시설로 단계별로 변화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위치한 운영주체가 개인인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
 - 거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운영전략과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실태조사 결과

- 2011년 조사한 내용과 기본조사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2022년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하였음
 - 장애유형별주거시설 중 지적장애인시설 33개소, 중증장애인시설 5개소, 지체장애인 시설 4개소, 시각장애인시설 1개소로 총 8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최종 응답한 61개소의 조사내용을 분석하였음
- 일반현황
 - 다른 유형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줄고 공동생활가정이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50% 이상을 차지함
- 종사자와 이용인 현황
 -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은 대체로 그 수가 적어졌으며 종사자의 연령은 20~30대는 줄어들었으며 60~70대 비율이 늘어났음
 - 종사자의 교육시간이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오히려 줄어든 경향이 있으며 보수는 임금지급기준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78.7%에 달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인력은 대부분 공익요원으로 그나마 전체의 16.4%에 그치고 필요로 하는 인력은 사회복지시설도우미로 실질적 도움을 받고자 함
 - 종사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급여 현실화였으며 기타로는 타 시설의 방문견학, 교대 근무, 대체인력지원 등이 있음

○ 시설관리 및 행정

- 행정업무에서 중요한 서류들은 2011년 대비 전반적으로 구비·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회의록과 안전점검일지 등 중요성이 높은 서류의 비율이 높아짐
- 보험가입 비율이 높아졌으나 화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가입의 비율이 낮아졌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정

- 연간 총 세입액은 늘어났으나 정확한 수치로 신뢰하기 어렵고 경기도와 시군의 보조 금액이 증가한 것은 분명함
- 이용인의 수급비를 인건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이용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를 이용료로 대체하고 있는 시설이 96.7%이며 통장 관리 시설장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프로그램

- 이용인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단순수용에 가장 많은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술활동, 사회적응훈련, 생활체육 등의 비율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음
-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어려움 1순위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며 재정, 장비 미흡 등을 들고 있음

○ 정책만족도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1.92점이며 그 이유로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많음
-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지자체가 개인운영 시설을 위해서는 인건비 증액지원과 시설 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시설의 운영전략

- 경기도 내 85개¹⁾의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이행 노력이 필요함

1) 2022년 7월 현재는 81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하여 지원하는 시설은 77개소임

- 경기도 내 개인운영 시설의 운영조건을 법인과 동일하게 맞춘 법정시설 사이에서 구성된 법정시설협회가 있으나 이 또한 정보가 없음
 - 경기도 내 운영주체 개인인 시설만 회원이 되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하며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정보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대표단체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통해 시설들의 권익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교육훈련의 기획, 정책의 변화, 경기도와 지자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을 담당할 수 있는 이익단체를 조직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체적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2011년과 비교하여 종사자의 교육시간에 변화가 거의 없는 조사결과는 시설장 이외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함
 - 1인당 교육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경기도 또는 시·군 내 타 시설이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에 종사자를 참여토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주는 공모사업 등을 제안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
 - 급여현실화 이외에 타 시설 방문견학, 벤치마킹 기회제공 등 각종 교육훈련에 대한 의견을 반영
-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조건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서비스 최소기준안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법인시설이 평가를 받을 때 지표의 핵심이 되는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규정에 있는 기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함
 - 개인운영시설은 법정조건을 법인시설과 유사하게 만족했고 서비스에도 차이가 없다면 서비스 최소기준을 준수하는 데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를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음
- 생활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보험가입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의 안전관련 보험을 가능한 가입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운영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방향

- 경기도는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히 개인운영 시설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함
 -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법적근거와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운영시설로 구분하는 시설의 명칭을 시설 당사자들과 통일하여 사용, 정리해야 함
 - 개인운영시설, 법정시설, 개인신고시설 등 정책논의와 결정에 혼란은 야기하는 명칭을 정확히 통일, 법인시설과 구분되는 공식명칭을 행정문서 등에 사용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 모든 상황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개인인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로 법인시설, 개인운영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대체인력 파견사업, 기능보강지원 등 시설에서 급선무로 요구하는 또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 기능보강지원은 시설 내 건축물 개보수나 설비자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소멸성 자산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에서의 지원이 가능함
 - 화재보험가입 비율이 88.5%, 차량보험 가입 75.4%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보험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함
- 장기근속 종사자가 많은 시설, 시·군 지도·점검 결과에서 시정조치 등이 없는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 포상할 수 있음
 -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가 장기 근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기근속자가 많은 시설, 프로그램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우수시설로 지정 표창함
- 중증장애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의 규모와 종사자 수에 따른 형태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근무 수당 등 비 인건비성 비용을 이용자 규모와 시설의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함

- 시설장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마련과 필요로 하는 영역에의 컨설팅 연계 등 가능함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시설에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지원 사업으로 누림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소규모 시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등을 계획하고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을 우선 선정하는 등 간접 지원을 방안으로 모색해야 함
 - 전문인력에 대한 부족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에서 전체 시설들과 경쟁하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야 함
 - 자동차 지원대상 공모사업, 경기도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단위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중증장애인이 이용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수행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특화사업 수행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목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6
II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9
	1.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과 정의	11
	2. 지역별 지원과 관리 현황	20
III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실태	27
	1. 실태조사 개요	29
	2. 시설운영 실태 분석결과	31
	3. 소결	87
IV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97
	1. 연구요약 및 함의	99
	2. 시설의 운영전략	103
	3.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방향	105
	참고문헌	109
	부록	111

Ⅰ 표 차례 Ⅰ

〈표 I-1〉 경기도 장애유형별거주시설 현황	5
〈표 II-1〉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12
〈표 II-2〉 정책추진 현황	13
〈표 II-3〉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	15
〈표 II-4〉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2021.11월 현재)	17
〈표 II-5〉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19
〈표 II-6〉 기초수급자 급여 종류	22
〈표 II-7〉 경기도 지원 현황	23
〈표 II-8〉 지자체별 지원 조례	24
〈표 III-1〉 기관용 조사내용	30
〈표 III-2〉 운영주체 현황	31
〈표 III-3〉 운영형태	33
〈표 III-4〉 시설보유차량 현황	33
〈표 III-5〉 시설소유형태	34
〈표 III-6〉 건물형태	35
〈표 III-7〉 시설구조	36
〈표 III-8〉 운영형태별 직원(종사자)현원	37
〈표 III-9〉 직원(종사자) 성별	38
〈표 III-10〉 직원(종사자) 시설장 친인척 여부	39
〈표 III-11〉 시설유형별 직원(종사자) 근무유형	40
〈표 III-12〉 직원(종사자) 근무기간	41
〈표 III-13〉 시설유형별 직원(종사자) 근무기간	42
〈표 III-14〉 직원(종사자) 관련 자격증 여부	42
〈표 III-15〉 직원(종사자) 급여지급	43
〈표 III-16〉 기관별 1인당 평균 교육 횟수	43
〈표 III-17〉 기관별 1인당 평균 교육시간	43
〈표 III-18〉 직원(종사자) 교육방법	44
〈표 III-19〉 직원(종사자) 교육비 현황	44
〈표 III-20〉 직원(종사자) 교육비 부담자	45
〈표 III-21〉 운영형태별 직원(종사자) 교육비 부담	45
〈표 III-22〉 시설유형별 직원(종사자) 교육비 부담	46

〈표 III-23〉 임금지급 기준 준수여부	46
〈표 III-24〉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 여부	47
〈표 III-25〉 현재 지원인력	48
〈표 III-26〉 지원 희망 인력	49
〈표 III-27〉 종사자 사기진작 요소	49
〈표 III-28〉 운영위원회 현황	50
〈표 III-29〉 운영위원회 외 지원기구 운영 현황	51
〈표 III-30〉 관리장부 보유현황	51
〈표 III-31〉 재무·회계장부 보유현황	52
〈표 III-32〉 시설장 지역사회 내 활동 여부	54
〈표 III-33〉 안전관련 보험가입 여부	54
〈표 III-34〉 안전설비 설치현황	55
〈표 III-35〉 연간 총 세입	56
〈표 III-36〉 연간 총 세출	56
〈표 III-37〉 수급비의 인건비 지급 활용 여부	57
〈표 III-38〉 입소보증금 유무	57
〈표 III-39〉 입소후원금 유무	58
〈표 III-40〉 재정운용 관련	59
〈표 III-41〉 운영예산 부족의 이유	60
〈표 III-42〉 증가희망 재정수입	60
〈표 III-43〉 시급한 지원금	61
〈표 III-44〉 기초생활수급비 이용료 대체 여부	61
〈표 III-45〉 기초생활수급통장 입·출금 관리	62
〈표 III-46〉 이용인 인원	63
〈표 III-47〉 시설유형별 이용인 인원	63
〈표 III-48〉 이용인 성별	63
〈표 III-49〉 시설유형별 이용인 연령	65
〈표 III-50〉 이용인 평균 입소기간	65
〈표 III-51〉 시설유형별 이용인 평균 입소기간	66
〈표 III-52〉 이용인 보호자 유무	67
〈표 III-53〉 이용인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68
〈표 III-54〉 시설유형별 이용인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68
〈표 III-55〉 이용인 장애유형	68
〈표 III-56〉 시설유형별 이용인 장애유형	70
〈표 III-57〉 이용인 장애정도	70

〈표 III-58〉 시설유형별 이용인 장애정도	71
〈표 III-59〉 이용인 장애인 등록 여부	71
〈표 III-60〉 시설유형별 이용인 월 부담금	71
〈표 III-61〉 운영형태별 이용인 월 부담금	72
〈표 III-62〉 프로그램 운영주체와 비용	73
〈표 III-63〉 장기계획 또는 연간계획 수립 여부	77
〈표 III-64〉 장기계획 미 수립 이유	77
〈표 III-65〉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78
〈표 III-66〉 이용인 대상 보건교육 실시 여부	78
〈표 III-67〉 이용인 대상 실시한 교육 내용(n=58)	79
〈표 III-68〉 이용인 대상 교육미실시 사유(n=4)	79
〈표 III-69〉 시설종사자 대상 보건교육 실시 여부	79
〈표 III-70〉 시설종사자 대상 실시한 교육 내용(n=54)	80
〈표 III-71〉 시설종사자 대상 실시교육 미실시(n=6)	80
〈표 III-72〉 재활보조기구 또는 사업비 지원	81
〈표 III-73〉 이용인 대상 정기(연 1회) 건강검진 실시 여부	81
〈표 III-74〉 건강검진 미실시 이유(n=11)	81
〈표 III-75〉 지역사회 내 특정기관 연계(n=55)	82
〈표 III-76〉 자원봉사자 유무	83
〈표 III-77〉 자원봉사자 도움	83
〈표 III-78〉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 만족도	84
〈표 III-79〉 시설 및 시설 종사자의 법적 기준 준수	85
〈표 III-80〉 법적기준 갖추지 못한 구체적 내용(n=9)	85
〈표 III-81〉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대상 교육 필요	86
〈표 III-82〉 시설장 대상 필요한 교육	86

Ⅰ 그림 차례 Ⅰ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7

〈그림 II-1〉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주체별 차이 21

〈그림 III-1〉 시설유형 32

〈그림 III-2〉 직원(종사자) 현황 37

〈그림 III-3〉 직원(종사자) 연령 38

〈그림 III-4〉 직원(종사자) 근무유형 40

〈그림 III-5〉 임금지급 기준 미준수 사유 47

〈그림 III-6〉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이용여부 53

〈그림 III-7〉 이용인 연령 64

〈그림 III-8〉 이용인 입소경로 66

〈그림 III-9〉 정책불만족 사유 84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장애인생활시설이 지역사회 장애인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을 수용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순 수용보호형태의 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 여전히 필요함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경증장애인 지원을 중심으로 재활훈련이나 서비스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작업능력이 부족하고 이동문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시설과 가정에 보호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 장애인복지 수요로 모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민간에서 국민의 개별적 복지문제를 해결하며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법인시설이 모든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운영시설이 사회복지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도 인지해야 함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은 미신고시설 대책의 일환으로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²⁾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2)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로 정의함(시행 2022. 2. 18)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은 형태와 서비스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 해당
- 보건복지부는 2002년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하여 미신고시설은 감소하고 신고시설 수가 증가³⁾하였음
 - 시·군·구별로 남아있는 미신고시설은 시설폐쇄대상이 되고 폐쇄를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함
-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5조(미신고 등 시설에 대한 조치),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권장) 조항을 근거로 법정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함
 - 제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서는 시장·군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
 - 제6조에 도지사는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이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법인 장애인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경기도 내에서 법인시설로의 전환을 완료한 시설의 수는 많지 않으며(16개소), 아직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수는 유지되고 있음
 - 2017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법인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탈시설을 주장하는 장애인분야의 반발 등으로 확산 어려움
 - 전국민장애인부모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 등은 정책토론을 개최한 바 있음⁴⁾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은 2011년 이후 10년에 걸쳐 약 63개소 중 16개소가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공동생활 가정을 포함하여 85개소가 유지되어 오고 있음
- 장애인복지 분야 내에서의 비판⁵⁾에도 불구하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 보호영역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2021)에 의하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39개소 중 20%인 316개소가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27%가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임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4) 비마이너 보도자료(2017) “개인운영시설 법인기준 완화가 탈시설 정책? 경기도 토론회 반박 속 무산”

5) “2002년 개인운영시설의 조건부 양성화 정책을 펴면서 15년간 엄청난 시설 보강비를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에 퍼부어 왔다” “개인운영 시설의 ‘기능’이 보강되었다고 이용인들의 인권과 탈시설이 보장되었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개인운영 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탈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자행하려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흐름에 위배되는 행위”(비마이너, 2017)

-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수십 년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으며(불교공뉴스, 2015), 탈시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인 운영 시설이용인과 가족은 개인운영시설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표 I-1〉 경기도 장애유형별거주시설 현황

운영주체	합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중증장애	장애영유아	단기	공동
전국	1,539	28	16	7	317	251	9	157	754
경기도	316	6	4	2	78	52	1	24	149
개인	85	4	1	0	33	5	0	0	42

출처 : 보건복지부(2021)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이슈, 회계관리, 행정지원 교육 및 후원개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며 시설 내 생활인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점들이 있음
 - 2020년 00사에서 시설 입소 장애인 사망사건⁶⁾이 발생하는 등 미신고시설과 운영 주체가 개인인 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형식을 갖추어 법정기준 범위에서 신고운영 되지만 법인시설과는 차별되는 구조임
 - 개인시설, 개인운영시설 또는 개인운영 신고시설,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소규모시설, 법정시설, 민간사회복지시설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장애인생활시설은 2002년 6월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해 미신고시설에서 조건부 신고시설과 개인운영 신고시설을 거쳐 법정시설로 전환을 완료한 시설을 포함
- 운영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 내 시설 인프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향 설정이 필요함
 - 시설의 기본적인 일반현황, 재정상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보건의료,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개인운영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 권익보호와 피해사고 방지 등에 사항과 제공 가능한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6) 비마이너 보도자료(2020)“장애인 사망한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시설과 한 지붕 아래에 있다”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위치한 운영주체가 개인인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거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제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결과는 운영주체가 개인인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재 문제점, 운영 상 개선점을 파악하고 향후 운영 및 지원방향으로서 대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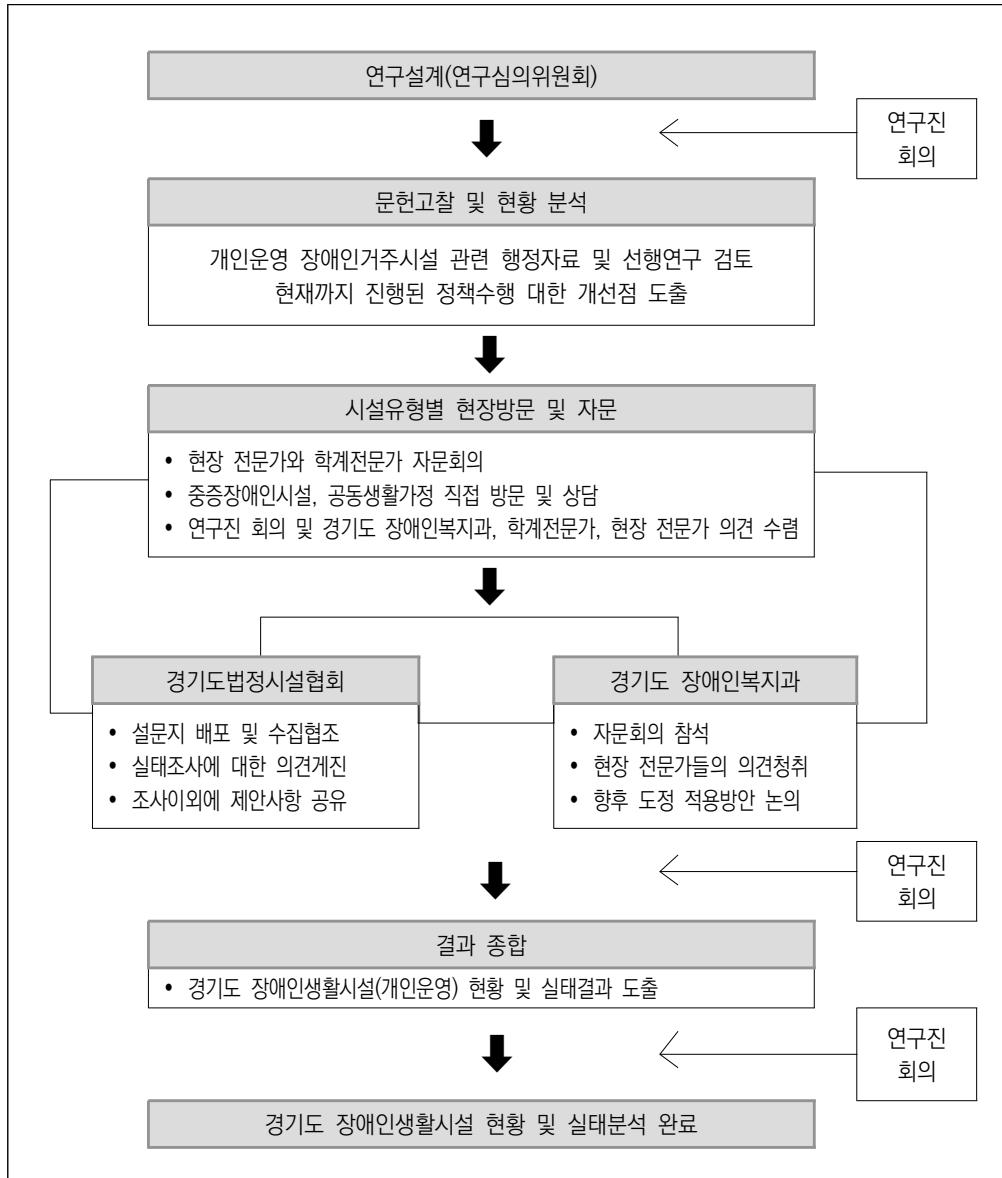
2. 연구방법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경기복지재단, 2011; 장애인 개운영 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국가인권위원회, 2017; 나유정, 2008; 등)
- 운영현황 조사
 - 2022년 6월 현재 시점 이용인, 종사자, 시설운영 현황 등
 - 조사방법: 사전 설계된 조사지를 경기도-시군-시설을 통해 조사 및 회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경기도법정시설협회 협조)
 - 조사내용: 일반현황, 재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정책 관련 의견 등
 - 조사시점: 2022년 6월 현재
 - 조사기간: 2022년 5월 2일 ~ 6월 10일
- 자문회의
 - 경기도 법정시설협회,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학계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 설계 의견수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의 개선사항, 향후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 취합하여 반영

□ 연구 흐름도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II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1.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과 정의
2. 지역별 지원과 관리 현황

II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1.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과 정의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⁷⁾의 개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운영주체가 개인으로 신고시설로 정의 가능
 - 법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
 - 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시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즉, 법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정부 이외에 법인과 개인 모두가 설치·운영 신고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임
-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나 운영 주체가 법인인 시설은 국고지원, 개인시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기본원칙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7) 2022년 2월 18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의 제시

-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보건복지부)의 세부 분류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함
- 2022년 발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에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대분류하고 생활시설 중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종류가 다시 구분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실태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 운영주체가 개인인 장애인생활시설을 개인운영 생활시설로 정의하여 사용함

〈표 II-1〉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장애인	생활	◦ 생활시설	•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쉼터	•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13
	• 피해장애인아동쉼터				
	이용	◦ 지역자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정책과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022)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책변화

- 미신고 시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개념정의를 통해 운영자, 이용인, 공공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보건복지부는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미신고시설 대책을 정리하고 신고전환한 시

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였음

- '02년 5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미신고시설은 2005년부터 대폭 감소하고 신고시설 수가 증가하였음(보건복지부, 2005)-보도자료 5월 23일 보건복지부 - 2000년대 정부의 '시설 양성화정책'으로 10여년 가까이 법적기준을 향상시켜 온 개인 운영의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은 2011년도 이전의 완화된 규정에서 현재 장애인 복지법안의 법적기준을 완료한 법정시설로 신고를 진행함

〈표 II-2〉 정책추진 현황

연도	추진경과	비고
2002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발표	1단계 조건부신고 시설로 전환
200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지원 : 조건부신고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2004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보완 지침 발표	
2005	• 미신고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 발표	
2008	• 생활시설 소규모화, 일반주거용 건물 매입을 활용한 시설 설치 허용 •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실시	2단계
2009	•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기준 충족 조사	개인운영 시설로 명칭변화
2010	•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정비 관련 간담회 실시	
2011	• 경기도 내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 63개소 중 30개소가 법정신고 완료	
2015	• 법인시설로 전환 조건 완화 발표	3단계 법인시설과 조건을 갖춘 법정조건만족 신고시설 법정시설로 명칭변화
2017	• 법인시설과 같은 규정을 적용, 사회복지 정규시설로 설치신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활동 •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 전환 기준 완화 공개 대토론회 개최	
2022 현재	• 법인 전환 16개소	

- 이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개인이 운영 중인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을 동일 시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
- 이후 경기도, 강원도, 충북, 대전 등 시도에서 신고조건을 충족하고 신고를 마친 개인 운영시설에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점차 확산되면서 개인운영시설의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었음
- 강원도 조례의 정의에 의하면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개별법에서 정한 설치·운

- 영기준을 갖추어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국가에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고 명시하였음
- 위의 정의가 법률적, 합리적 이해를 돕기에 가장 적합한 정의로 판단함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의

- 경기도에는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가 있으나 이는 법정요건을 갖춘 개인 운영시설 관계자들에 의해 임의정립 된 조직임
 - 2012년 이후 법정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시설들의 모임으로 법정시설협회를 조직하고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⁸⁾
 - 이를 통해 16개의 시설이 개인운영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 단체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음
- 공공에서는 운영의 주체에 따른 구분을 명칭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음
 - 국고지원을 받는 장애인거주시설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으로 주로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임
 - 시설 운영의 주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행정서류에는 여전히 개인운영 시설로 명기함
 - 본 보고서는 사업안내와 행정현황을 근거로 하여 개인운영 생활시설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함
- 종합하면 본 연구 중 실태조사의 대상은 유형별 장애인생활시설 중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이 개인운영시설이 되며 이를 그대로 연구 제목에 반영하였음
 -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법인인 시설은 국고보조를 받으며 보장시설로서 시설급여를 기반으로 관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반면, 개인운영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또는 이용료를 실비로 받아 일반수급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함
 - 장애인을 입소자로 받는 절차는 법인시설은 시·군·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배정받게 되나 개인운영시설은 개인과 시설의 계약에 의해 입소하게 됨
 -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개인운영시설은

8) 2012년 이후 법정시설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로 구분되고 있음. 그러나 명확한 구분은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이며 여기에는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임

- 광역시자치체와 기초자치체에서 매칭한 보조금을 지원받음
- 무엇보다 큰 차이는 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공과 함께 지면서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시설에 속한 잔여재산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게 됨. 개인운영시설은 모든 경로를 통해 시설에 부여되는 재산이 결국은 개인의 소유로 남게 됨

〈표 Ⅱ-3〉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

구분	법인시설	개인운영시설
기초생활수급자관리	보장수급자로 관리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로 관리
입소절차	장애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시·군·구를 통해 입소	입소자와 시설장,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계약에 의한 입소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에 대한 지원)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권고사항 (인건비 및 사업비 도비 + 시군)
기능보강	국비·도비 보조	해당사항 없음
재무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설자체 회계 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운영방법	이사회 의결에 의한 시설운영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 운영
후원금 등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 (평가지표)	재무회계 규칙 해당 없음
잔여재산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개인

*자료 : 유정원 외(201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참조

- 2021년 말 현재 경기도에는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이 총 85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도 여기에 포함되었음
 -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수는 2011년말 기준으로는 63개소가 전수였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는 85개소임
 - 이용인 29인 이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화 과정을 지나면서 공동생활가정 형태로의 전환과 법인전환, 폐쇄 등으로 유형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측됨
 - 시설의 정원은 1,166명이나 입소생활 하고 있는 현재인원은 945명이며 종사자 정원은 369명이나 현원은 357명임

〈표 II-4〉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2021.11월 현재)

(단위 : 개소,명)

2011			2021			인원			
시·군	유형	개소 수	시·군	유형	개소 수	입소현황		종사자현황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수원시	지체	1	수원시	지체	1	12	12	5	5
				공동	2	14	6	5	5
용인시	지적	4	용인시	지적	3	40	30	14	13
고양시	지적	4	고양시	지적	4	112	98	37	34
				시각	1	29	21	10	7
				공동	1	8	7	3	3
성남시	지적	6	성남시	지적	4	75	68	23	23
화성시	공동	1	화성시	중증	1	13	11	4	4
				공동	4	22	16	8	8
부천시	지적	2	부천시	중증	1	29	12	5	5
	중증	2							
남양주시	지적	4	남양주시	지적	5	145	84	31	30
	-	2		공동	1	8	8	3	3
안산시	지적	1	안산시	지적	1	29	21	7	7
				공동	3	18	17	7	7
시흥시	지적	1	시흥시	공동	6	24	23	7	9
김포시	지적	1	김포시	지적	1	20	8	4	4
	지체	1		중증	1	13	13	6	6
	-	1							
파주시	지적	3	파주시	지적	1	25	25	8	8
	중증	1		중증	1	10	4	3	3
	-	2							
의정부시	지체	1	의정부시	지적	1	10	10	6	6
				공동	1	6	6	3	3
광주시	지적	3	광주시	지적	3	77	59	19	23
				공동	2	12	11	4	4
광명시	지적	1	광명시	지적	1	29	26	14	14
하남시	지적	2	하남시	지적	2	49	49	13	13

2011			2021			인원			
시·군	유형	개소 수	시·군	유형	개소 수	입소현황		종사자현황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양평군	-	3	양평군	공동	6	36	35	9	14
여주군	지적	1	여주시	지체	1	9	7	3	3
				공동	2	8	4	2	2
구리시	지적	2	구리시	지적	1	29	26	8	8
양주시	지적	1	양주시	지적	3	84	80	34	27
	지체	3		지체	1	28	25	12	8
포천시	지적	6	포천시	지적	2	37	23	12	11
	시각	1		공동	5	21	21	9	9
	지체	1		지체	1	16	14	9	6
가평군	-	1	평택시	지적	1	7	3	2	2
			안양시	공동	1	7	7	2	2
			이천시	중증	1	10	10	4	2
				공동	1	4	4	2	2
			안성시	공동	7	41	41	12	14
계		63	계		85	1,166	945	369	357

*자료 : 유정원(201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21)

□ 장애인생활시설과 이용인 현황

- 2021년 현재 전국에는 1,539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약 30,000명의 인원이 생활하고 있음
 - 경기도에 가장 많은 시설 수(20.5%)와 장애인 이용인(20.2%)이 있으며 서울시에 두 번째로 많은 수(이용인 3,403명)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두 지역에서 전국의 40%에 가까운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형별장애인거주시설 중에서는 지적장애인시설이 317개소로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 시설이 251개소, 단기거주시설이 157개소가 있음
 -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생활시설 중에는 가장 많은 수로 75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각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로의 적응 및 시설의 소규모화에 따른 변화라고 할 것임

- 경기도에는 전국 장애인생활시설의 약 20%에 해당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5,876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법인시설까지 포함하여 총 316개의 시설 중에 공동생활 가정이 149개소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인시설 78개소, 중증장애인시설 52개소, 단기거주시설 24개소, 지체장애인시설 6개소, 시각장애인시설 4개소 등이 있음
 - 개인운영시설의 수는 시설유형별로는 공동생활 가정이 42개소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인시설 33개소, 중증장애인시설 5개소, 지체장애인시설 4개소, 시각장애인시설 1개소로 총 85개소가 있음

〈표 II-5〉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	합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중증장애		장애영유아		단기		공동	
	시설 수	현원	시설 수	현원	시설 수	현원	시설 수	현원	시설 수	현원	시설 수	현원	시설 수	현원	시설 수	현원	시설 수	현원
합계	1,539	29,086	28	1,121	16	579	7	205	317	11,349	251	10,886	9	361	157	1,733	754	2,872
서울	265	3,403	2	91	3	93	1	28	15	661	24	1,342	2	80	43	447	175	661
부산	69	1,320	3	116					15	669	7	299	2	66	3	32	39	138
대구	51	1,415	2	209					10	502	9	509	1	57	2	22	27	116
인천	71	995	2	70	1	45	1	20	7	214	10	416	1	34	5	40	44	156
광주	79	959	4	95	2	33			15	434	4	149			4	53	50	195
대전	76	1,182	1	56	1	46			8	365	11	383			19	207	36	125
울산	27	651					1	21	1	57	9	455			6	83	10	35
세종	6	163							3	102	1	53					2	8
경기 (개인)	316	5,876	6	117	4	93	2	62	78	2,465	52	2,236	1	70	24	252	149	581
			(4)		(1)				(33)		(5)						(42)	
강원	70	1,524			1	59			19	621	16	661			9	86	25	97
충북	92	1,863	1	64	2	80	1	59	20	658	14	781			4	40	50	181
충남	56	1,731							17	909	17	686			7	76	15	60
전북	70	1,610	3	107	1	44			31	948	12	396	1	29	2	19	20	67
전남	68	1,373	3	110	1	86	1	15	26	754	8	285			3	27	26	96
경북	93	2,554	1	86					29	1,040	34	1,212			10	146	19	70
경남	96	1,903							15	713	17	779	1	25	11	159	52	227
제주	34	564							8	237	6	224			5	44	15	59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 지역별 지원과 관리 현황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주체와 지원

- 시설의 유형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개인운영시설 모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신고 운영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분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세부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로 대분류하고 공통사항과 유형별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중에는 청각장애인시설, 장애인영유아시설, 단기거주시설은 없음
 - 장애인생활시설과 거주시설이 지속적으로 혼용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어정리와 합의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함
 - 정확히는 장애인생활시설 분류 안에 유형별 거주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이 포함됨
- 운영주체는 법인⁹⁾ 또는 개인으로 구분되며 주체에 따라 입소 이용인의 지원주체와 법률적 근거가 달라짐
 - 개인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은 2022년 6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¹⁰⁾를 근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음
 - 지원의 주체는 법인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며 개인운영 시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와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이용대상자는 국고지원을 받는 법인시설의 시설수급자가 종합조사에 따라 결정되나 개인운영시설의 경우는 시설과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개인운영시설 지원 금액은 경기도와 시·군이 최소 10%~90%까지의 비율로 인건비 및 공공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9)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으로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림 II-1〉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주체별 차이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의 종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지체, 시각, 청각, 지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주체	법인	개인
설치·운영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시설의 설치)
지원 및 관리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용대상	①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를 만족하는 자 ②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시설장과 개인(가족)이 입소 결정한 장애인
이용금액	① 입소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384,000 범위 ②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1년분 이내 퇴소 시 반환	개인별 월이용 부담금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유형별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원 - 경기도 10~50%, 시군 90~50% 매칭 - 시설 인건비, 공공요금 등 - 2022년 기준 총7,671,600(천원) - 시군별 최소 7,440,000원 최대 372,480,000/시설별 53,211,000원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법적근거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제81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
 - 제44조(비용 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함 ②시설의 운영의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함
- 법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법인시설인지 개인시설인지에 대한 구분은 없음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¹¹⁾는 권고가 있음
 - 예산 지원세부 기준은 “기존 국고 보조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 기존 국고 보조대상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항목에 의해 국고보조금 시설을 의미함
 - 국고 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이며 보조금 지원 비율에 관한 안내는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음

〈표 II-6〉 기초수급자 급여 종류

구분	급여의 종류	시설이용
보장시설 ¹²⁾	시설급여	무료이용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개인운영시설)	생계급여	실비이용

*기초수급자가 생활하는 시설이더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지자체 포함)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음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이러한 지원 비율에 따라 개인시설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11) 보건복지부(2022)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표 II-7〉 경기도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자체/지원) -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지원				
	사업량 (개소)	사업비계		도비	부담 지시액(시군)	
합계	77	7,671,600		2,273,520	5,398,080	
수원시	3	217,200		21,720	195,480	
용인시	3	354,000		35,400	318,600	
고양시	6	937,200		281,160	656,040	
성남시	4	608,400		60,840	547,560	
화성시	5	291,600		29,160	262,440	
부천시	1	142,800		42,840	99,960	
남양주시	7	931,200		372,480	558,720	
안산시	4	291,600		58,320	233,280	
평택시	1	37,200		7,440	29,760	
안양시	1	37,200		11,160	26,040	
시흥시	5	186,000		37,200	148,800	
김포시	2	248,400		49,680	198,720	
파주시	2	217,200		86,880	130,320	
의정부시	2	142,800		57,120	85,680	
광주시	5	577,200	시설유형, 종사자, 이용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음	230,880	346,320	
광명시	1	180,000		54,000	126,000	
하남시	2	322,800		32,280	290,520	
군포시	-	-		-	-	
오산시	-	-		-	-	
양주시	4	682,800		273,120	409,680	
이천시	2	142,800		28,560	114,240	
구리시	1	180,000		54,000	126,000	
안성시	6	223,200		89,280	133,920	
의왕시	-	-		-	-	
포천시	7	540,000		270,000	270,000	
양평군	2	74,400		37,200	37,200	
여주시	1	105,600		52,800	52,800	
동두천시	-	-		-	-	
과천시	-	-		-	-	
가평군	-	-		-	-	
연천군	-	-		-	-	
배정유보	-	-		-	-	
비고	1. 부담지시율			2. 부담근거	3. 산출기초	
	구분	내시비율(%)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비용의보조)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국비	-				
	도비	10-50				
	시군비	90-50				
자부담	-					

자료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지방자치단체 별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지원조례

-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의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호¹³⁾에 두고 있음
 - 지원의 대상 및 내용에 관하여 “개인운영시설”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 개인이 신고한 시설, 설치·운영하는 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단어의 차이는 있으나 운영의 주체가 개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지원의 내용은 다양하며 기능보강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시도마다 차이를 두고 있음
 - 특히, 경기도의 조례는 조례의 목적, 지원내용, 대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표 II-8〉 지자체별 지원 조례

지역	조례명	지원의 대상 및 내용	공통사항
강원도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운영시설¹⁴⁾ • 기능보강비,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 지원계획수립 • 법인시설로의 전환 권장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¹⁵⁾ •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에게 직접 필요한 경비 등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운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호)¹⁶⁾ • 공공요금 등 운영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운영시설 • 인건비 20% 이내, 운영비 20%이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신고한 시설 •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전라남도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 인건비, 공공요금 	

13)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보조금 등)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지역	조례명	지원의 대상 및 내용	공통사항
전라북도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청남도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 개인이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 · 인건비, 공공요금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기도의 조례는 타 시·도의 조례와 다른 특징을 가짐

- 조례의 목적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명시하였음
- 또한 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¹⁷⁾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인·개인 등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타 시·도 조례의 목적에는 “개인운영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호¹⁸⁾를 근거로 제시하였음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의 대상에도 개인운영시설로 신고 된 시설에 한정 짓고 있음
- 비용의 지원에 대한 영역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경비를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종사자 인건비(13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 이를 26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음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

15) 장애인복지법 제59조2항에 따라 설치·신고한 시설

16)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18) 시행령 제20조의3항.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Ⅲ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실태

1. 실태조사개요
2. 시설운영 실태 분석결과
3. 소결

Ⅲ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실태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면서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한 시설리스트를 바탕으로 장애유형별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85개소
 - 공동생활가정 42개소, 지적장애인시설 33개소, 중증장애인시설 5개소, 지체장애인시설 4개소, 시각장애인시설 1개소
 - 전수 85개소 중 61개소(72%) 응답한 내용 분석함

□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지 구성 및 내용 보완
 - 경기복지재단에 2011년 기초연구에 활용한 질문지를 기초로 2022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함
 - 자문회의를 통한 설문지 수정 및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

일정	회차	참석자 및 소속	논의사항
2022. 4. 18. 2022. 4. 29.	1차, 2차	최*구(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회장	- 연구목적 및 진행방법 공유 - 설문조사 문항구성 검토 - 조사일정 결정 - 협조사항 공유
		양*영(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부회장	
		공*영(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정책실장	
		신*욱(성결대학교 교수)	
		정*숙(해뜨는집) 원장	
		왕*일(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외 1명	
유*원(경기복지재단) 외 1명			

○ 경기도 장애인법정시설협회 실태조사 협조

- 조사기간 : 2022년 4월 30일 ~ 6월 3일
- 조사방법 : 장애인법정시설협회를 통해 시설로 설문지 배포 및 수집
- 조사내용

〈표 Ⅲ-1〉 기관용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일반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시설신고일, 시설개소일, 이용인 인원, 운영주체, 시설유형, 운영형태, 시설보유차량 • 시설면적, 시설소유형태, 건물형태, 시설구조 • 종사자 현황: 현원, 정원, 직위, 성별, 연령, 시설 내 주요 담당업무, 시설장 친인척 여부, 근무유형, 근무기간, 관련 자격증, 급여지급 • 교육현황: 직위,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주관기관명, 교육비 유무, 교육비 부담자 • 보수지급 관련, 인력지원 관련, 종사자에게 필요한 것 • 운영위원회 관련, 장부 보유현황,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이용 여부, 시설장 대외활동 현황, 안전관련 보험가입, 안전설비 설치현황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세입, 보조금(국비, 도비, 시·군비), 일반수급자 수급비, 시설자체부담금, 이용인 월 이용료, 후원금, 기타 • 연간 총 세출, 인건비, 프로그램비, 식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비, 의료비, 교육비, 예비비, 기능보강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여비, 기타 • 수급비 활용, 입소보증금 관련, 입소후원금 관련 • 재정운용, 예산집행, 회계규정, 회계감사, 회계투명성, 후원금·금품관리, 후원자관리 • 시설운영 예산관련, 지원금 관련, 시·군과 시설 각각의 역할
이용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입소기간, 입소경로, 보호자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인 등록 여부, 이용인 월 부담금
프로그램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운영주체(인력, 장소, 예산), 2021년 사용액, 2022년 예정액 • 장기계획(연간계획) 관련, 프로그램 실시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제공 안내서 관련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 대상 보건교육 관련, 시설종사자 대상 보건교육관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지 지원 관련 • 건강검진 실시 관련
지역사회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내 기관 연계관련 • 자원봉사자 관련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 만족도 관련 • 시설 및 시설 종사자 법적기준 충족 여부 • 시설장 교육 필요성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련

2. 시설운영 실태 분석결과

1) 시설 일반현황

○ 운영주체

- 2011년에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운영시설도 3개소(4.8%)가 있었으나 현재는 전수 개인운영 시설임

〈표 Ⅲ-2〉 운영주체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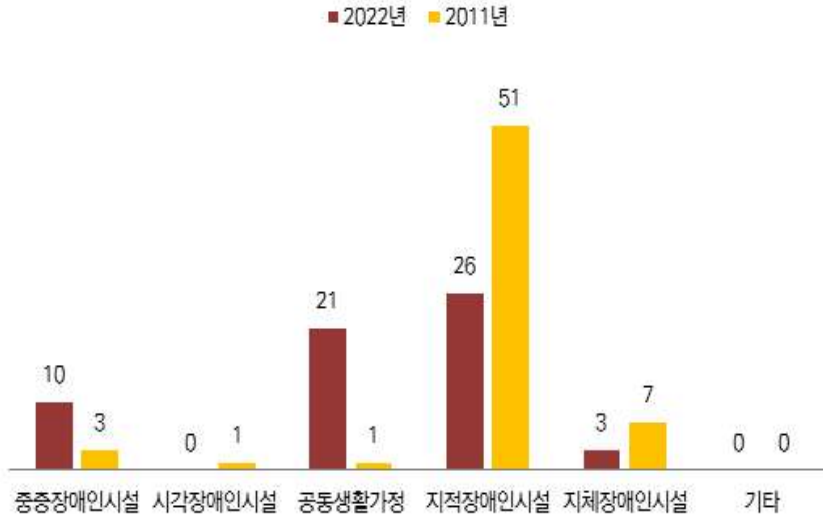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11년
운영주체 (N=61)	법인	-	-
	개인	61(100)	60(95.2)
	종교기관	-	3(4.8)
	임의단체	-	-
	기타	-	-

○ 시설유형 및 운영형태

- 시설의 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시설’이 4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 34.4%, ‘중증장애인시설’ 16.4%, ‘지체장애인시설’ 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1년 조사에서는 63개소 중 51개소가 지적장애인시설로 분류되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1개소에 불과했음
- 2022년 조사에서는 60개소 중 21개소가 공동생활가정이며, 중증장애인시설 10개소, 지적장애인시설 26개소 등으로 분류가 달라졌음
- 이는 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추진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탈시설화 기조와도 부합하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Ⅲ-1〉 시설유형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는 ‘실비시설¹⁹⁾이 55.7%, ‘무료시설²⁰⁾인 경우가 31.1%로 나타남
- 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는 실비이용인을 전체의 3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개인운영 시설은 운영형태를 실비시설과 무료시설로 구분하며 이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실비시설이 과반을 넘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은 대부분은 실비시설로 운영되며 지적장애인시설은 무료시설이 더 많으나 실비시설로 운영되는 곳이 있음

19)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주시설

20)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지자체에서 이용료를 제공하는 실비 제공대상자(무료대상자)의 거주시설

〈표 Ⅲ-3〉 운영형태

(단위 : 개소,%)

구분	운영형태			전체
	실비시설	무료시설	무응답	
중증장애인시설	6	4	1	11(18.0)
공동생활가정	18	0	3	21(34.4)
지적장애인시설	6	15	4	25(40.9)
지체장애인시설	3	0	0	3
기타	0	0	1	1
계	33	19	8	61

○ 시설보유차량

- 시설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유 차량 ‘있음’이 78.7%, ‘없음’이 3.3%로 나타났으며, 차량을 소유한 경우 ‘평균 보유 차량 개수’는 1.74대로 조사됨
- 시설 보유 차량 있는 경우 ‘소유’가 65.6%, ‘임대’가 1.6%, ‘기타’가 3.3%로 나타남
- 2011년과 비교하여 차량소유 비율이 80.9%에서 2022년 65.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4〉 시설보유차량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22년	2011년
시설보유차량 (N=43)	소유	40(65.6)	51(80.9)
	임대	1(1.6)	1(1.5)
	기타	2(3.3)	2((3.1)

2) 시설구조 및 규모

○ 시설면적과 시설소유형태

- 장애인 생활시설의 평균 대지면적은 2,171m, 연면적 평균은 1,445m² 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설소유형태로는 ‘기관 자체 소유(자가)’가 51개(8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건물 일부 임대(월세)’가 4개(6.6%), ‘건물 전체 임대(월세)’와 ‘무상대여’가 각각 2개(3%), ‘건물 일부 임대(전세)’, ‘건물 전체 임대(전세)’가 각각 1개(1.6%) 순으로 조사됨
- 장애인 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 임대(전세)의 경우, 한 개 기관이었으며 전세보증금은 41,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건물 전체 임대(월세)의 경우 2개 기관이었으며, 한 기관은 보증금 평균 1억 5800만원, 월지급액 330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지급액 15만원을 지불하고 있었음
- 건물 일부 임대(전세)의 경우, 한 개 기관이었으며, 전세보증금은 29,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건물 일부 임대(월세)의 경우, 보증금 평균 3,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 지급액의 경우 조사된 것이 없음
- 전체 중에서 자가로 시설을 소유한 경우가 88.9%로 다소 높아졌음

〈표 Ⅲ-5〉 시설소유형태

(단위 : 개소, %)

구분		2022년	2011년	
시설소유형태 (N=61)	자가	51(83.6)	56(88.9)	
	건물전체임대 (전세)	개수	1(1.6)	0
		보증금	41,000	
	건물전체임대 (월세)	개수	2(3.3)	1(1.5)
		보증금	8,050	
		월 지급액	172.5	
	건물일부임대 (전세)	개수	1(1.6)	1(1.5)
		보증금	29,000	
	건물일부임대 (월세)	개수	4(6.6)	1(1.5)
		보증금	3,000	
		월 지급액	-	
무상대여	2(3.3)	4(6.1)		
기타	-			

○ 건물형태

- 건물형태로는 ‘단독주택’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1.5%, ‘아파트’, ‘기타’ 각각 8%, ‘상가건물’ 3%, ‘가설건축물’ 1.6% 순으로 나타남
- 2011년과 비교하여 단독주택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음

〈표 III-6〉 건물형태

(단위 : 개소,%)

		2022년	2011년
건물형태 (N=61)	아파트	5(8.2)	1(1.6)
	상가건물	3(4.9)	3(4.8)
	연립주택·다세대주택	7(11.5)	2(3.1)
	가설건축물	1(1.6)	2(3.1)
	단독주택	36(59.0)	46(73.0)
	기타	5(8)	9(14.2)

○ 시설구조

- 시설구조로는 ‘화장실’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57개로 응답한 시설 모두가 갖추고 있는 시설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실’이 55개, ‘거실’ 및 ‘조리실’ 각각 53개, ‘목욕실’ 49개, ‘세탁장’ 42개, ‘집단활동실’ 29개, ‘건조장’ 27개, ‘의무실(의료재활실)’ 17개, ‘재활상담실’ 15개 순이었고, ‘자원봉사실’을 갖춘 시설이 10개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7〉 시설구조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시설구조 (n=57개)	사무실	55(96.4)
	의무실(의료재활실)	17(29.8)
	재활상담실	15(26.3)
	집단활동실	29(50.8)
	거실	53(92.9)
	조리실	53(92.9)
	목욕실	49(85.9)
	세탁장	42(73.6)
	건조장	27(47.3)
	화장실	57(100)
	자원봉사실	10(17.5)

3) 직원(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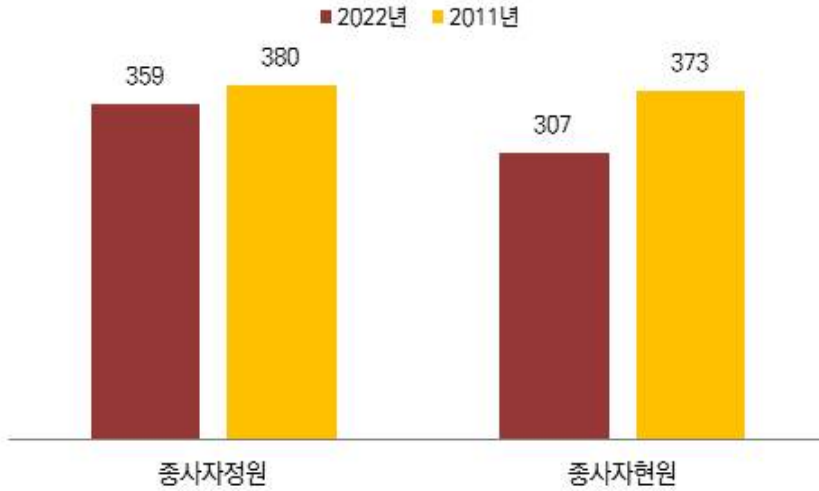
(1) 종사자 일반적 현황

○ 종사자 수

- 종사자 정원과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 정원은 359명이었으며, 종사자 현원은 307명으로 나타남. 기관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원은 기관당 6명이었으며, 현원은 기관당 5.1명인 것으로 확인됨
- 2011년과 비교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의 종사자의 수는 정원(380명), 현원(373명)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공동생활가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종사자 수 역시 줄어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으로 이용자가 29명 미만 대형기관이 많았던 과거에 비하여 종사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기관별로 필요한 직원의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닐 수 있음

〈그림 Ⅲ-2〉 직원(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운영형태별 종사자 현원

- 운영형태별 직원 종사자 현원을 조사한 결과, 실비시설의 종사자 현원 평균은 3.8명이었으며, 무료시설의 종사자 현원 평균은 6.7명으로 나타남

〈표 Ⅲ-8〉 운영형태별 직원(종사자)현원

(단위 : 명)

구분		실비시설(n=34)	무료시설(n=19)
종사자 현원	기관 평균	3.8	6.7
	총 인원	119	141

○ 종사자 성별

- 전체 종사자의 성별로는 ‘여자’가 66.7%, ‘남자’가 33.3%로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평균을 보아도 여자가 기관 당 평균 3.3명, 남자가 1.6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9〉 직원(종사자) 성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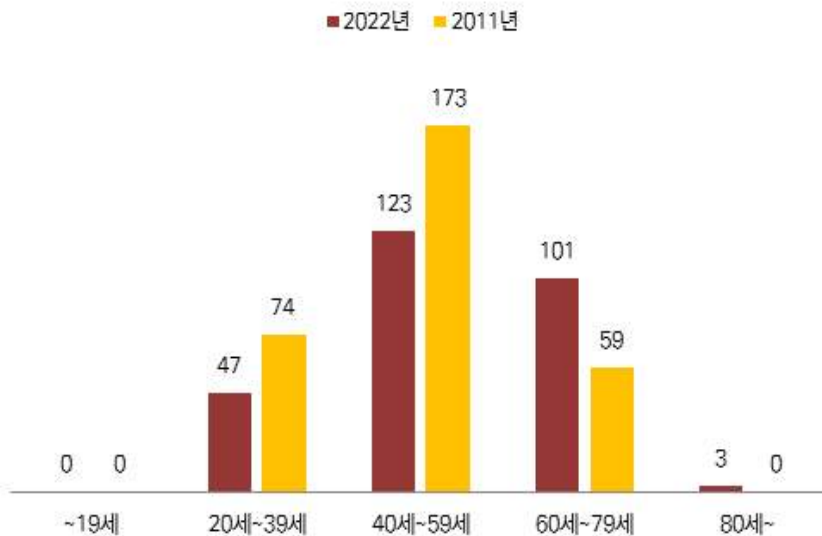
구분		기관 평균(명)	이용자 수
성별 (n=300)	남자	1.6	100(33.3)
	여자	3.3	200(66.7)

○ 종사자 연령

- 종사하는 직원의 연령으로는 '40~59세'가 4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60~79세'가 36.9%, '20~39세'가 17.2%, '80세이상'이 1.1%의 순으로 나타남
- 2011년과 비교하여 2022년에는 '60세~79세' 사이 연령이 인력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Ⅲ-3〉 직원(종사자) 연령

(단위 : 명)



○ 시설장과의 친인척 여부

- 종사자의 시설장 친인척 여부에 대한 조사로는 ‘아니오’가 78.9%, ‘예’가 21.1%로 친인척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시설장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시설에 근무하는 비중은 2011년에는 38.6% 이상이던 것이 2022년을 52개소(21.1%)로 줄어들었음

〈표 Ⅲ-10〉 직원(종사자) 시설장 친인척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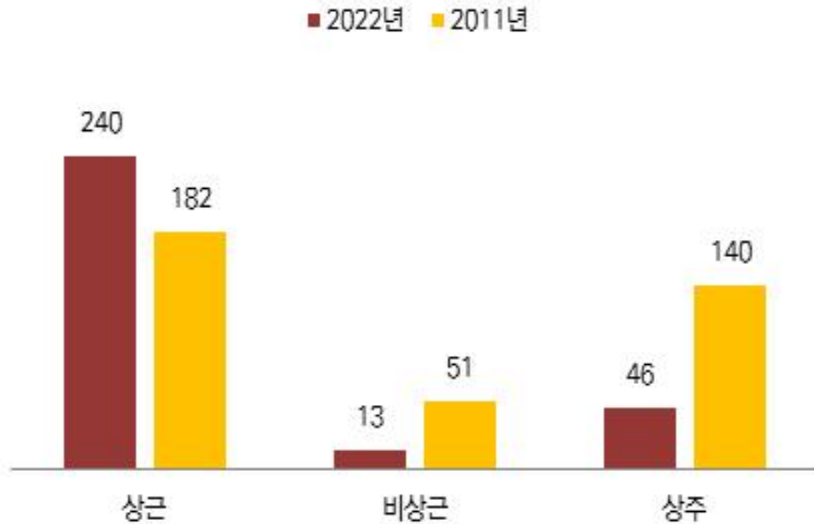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11년
		기관 평균(명)	명(%)	전체
시설장 친인척 여부 (n=246)	예	0.9	52(21.1)	144(38.6)
	아니오	3.2	194(78.9)	229(61.4)

○ 종사자 근무유형

- 종사자의 근무유형으로는 ‘상근’이 8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상주’한다는 응답이 15.4%, ‘비상근’이 4.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11년에는 상근종사자 비율이 48.8% 밖에 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는 상근 종사자가 기관 평균 4명으로 장애인에게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상주하는 비율은 37.5%에서 15.4%로 줄어들었음

〈그림 III-4〉 직원(종사자) 근무유형

(단위 : 명)



-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근무유형을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평균 종사자 인원은 ‘상근’ 종사자가 약 4.3명, ‘비상근’ 종사자가 약 0.3명, ‘상주’ 종사자가 0.7명으로 나타남. 공동생활가정의 평균 종사자 인원은 ‘상근’ 종사자가 약 1.3명, ‘상주’ 종사자가 0.7명, 비상근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유형별로 봤을 때 공동생활가정은 이용인 수와 비례하여 종사자 수가 적으므로 상주하는 인력 역시 적을 수 밖에 없으나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의 경우 상근 인력은 많지만 생활시설에 상주하는 비율은 높지 않으므로 근무형태가 함께 생활 보다는 출퇴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표 III-11〉 시설유형별 직원(종사자) 근무유형

(단위 : 명)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평균	공동생활가정 평균
근무 유형 (n=296)	상근	4.3	1.3
	비상근	0.3	0
	상주	0.7	0.7

○ 종사자 근무기간

- 종사자의 근무 기간으로는 '5년 이하'가 4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5년초과~10년이하'가 21.0%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년초과~15년이하', '20년초과'가 13.2%로 동일하게 나타남. 마지막으로 '15년초과~20년이하'가 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11년에는 5년이하 경력을 가진 종사자가 62.5%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10년~15년 경력종사자가 늘어났으며 그 이상 지속 종사자는 오히려 줄었음
- 신규로 직종에 진입하는 인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존의 근무자가 지속 종사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 근무 조건이나 인건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음

〈표 Ⅲ-12〉 직원(종사자) 근무기간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11년
		기관 평균(명)	전체	전체
근무기간 (n=281)	5년이하	2.1	125(44.5)	235(62.5)
	5년초과~10년이하	1	59(21.0)	60(16.1)
	10년초과~15년이하	0.6	37(13.2)	40(10.7)
	15년초과~20년이하	0.3	23(8.2)	18(4.8)
	20년초과	0.6	37(13.2)	22(5.9)

-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근무기간을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서 5년 이하로 근무한 종사자가 평균 2.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5년초과~10년이하로 근무한 종사자가 1.1명, 20년 초과 0.7명, 10년초과~15년이하 0.6명, 15년초과~20년이하 0.3명으로 확인됨. 공동생활가정에서도 5년 이하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0년 초과~15년 이하(0.4명), 5년초과~10년 이하, 15년초과~20년이하(0.3명), 20년초과 0.2명의 순으로 조사됨

〈표 Ⅲ-13〉 시설유형별 직원(종사자) 근무기간

(단위 : 명)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평균	총인원	평균	총인원
근무기간 (n=281)	5년이하	2.2	109	0.6	13
	5년초과~10년 이하	1.1	52	0.3	7
	10년초과~15년이하	0.6	29	0.4	8
	15년초과~20년이하	0.3	17	0.3	6
	20년초과	0.7	33	0.2	4

○ 종사자 자격증 소지여부

- 종사자의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로는 ‘있다’가 67.6%, ‘없다’가 31.4%로 상대적으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가 기관 당 평균 3.4명, 자격증이 없는 종사자가 1.6명인 것으로 확인됨.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조무사 33명, 요양보호사 26명,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가 각각 19명, 소방안전관리사, 조리사, 활동보조사 등의 순으로 확인됨
- 2011년에는 자격증 소유자가 61.4%였으며 자격증이 없는 종사자가 39.4%였으나 소유비율은 높아지고 비소유 비율은 다소 낮아진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Ⅲ-14〉 직원(종사자) 관련 자격증 여부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11년
		기관 평균(명)	전체	전체
관련 자격증 여부 (n=299)	유	3.4	205(68.6)	210(61.4)
	무	1.6	94(31.4)	147(39.4)

○ 종사자 급여지급 여부

- 종사자의 급여 지급에 대한 응답으로는 ‘유급’이 97.2%, ‘무급’이 2.8%로 대부분의 종사자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에는 종사자 급여가 무급인 경우도 16.6%나 있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이는 개인운영 시설이므로 가능한 것으로 예측됨

〈표 Ⅲ-15〉 직원(종사자) 급여지급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11년
		기관 평균(명)	전체	전체
급여 지급 (n=287)	유급	4.7	279(97.2)	311(83.3)
	무급	0.1	8(2.8)	62(16.6)

(2) 종사자 교육현황

○ 직원(종사자) 교육현황

- 기관별 1인당 평균 교육 횟수를 살펴보면 시설장은 2.6회, 시설장 외 종사자는 3.3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6〉 기관별 1인당 평균 교육 횟수

(단위 : 회)

구분	시설장	시설장 외
기관별 1인당 평균 교육 횟수	2.6회	3.3회

- 기관별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은 시설장 15시간, 시설장 외 종사자는 17.7시간으로 나타남. 시설장보다 시설장 외 종사자의 평균 교육 횟수와 시간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함
- 2011년과 비교해서 시설장이 교육받는 시간은 확연히 늘었으나 시설장 외 종사자의 평균 교육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음
- 종사자들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표 Ⅲ-17〉 기관별 1인당 평균 교육시간

(단위 : 시간)

구분	2022년		2011년	
	시설장	시설장 외	시설장	시설장 외
기관별 1인당 평균 교육시간	15시간	17.7시간	5시간	20시간미만

- 교육방법으로는 시설장은 온라인 교육으로 참여한 것이 85.9%, 병행 10.2%, 오프라인 3.9%로 확인되었으며 온라인 교육 참여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시설장 외 종사자의 경우도 시설장과 같이 온라인 교육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I-18〉 직원(종사자) 교육방법

(단위 : 회,%)

구분		시설장	시설장 외
교육방법	온라인	135(85.9)	493(85.9)
	오프라인	6(3.9)	22(3.8)
	병행	16(10.2)	59(10.3)

- 시설장은 교육비가 있는 교육을 25.3% 수강하였으며, 교육비가 없는 교육을 74.7% 수강한 것으로 확인됨. 시설장 외 종사자는 교육비가 있는 교육을 15.9% 수강하였고, 교육비가 없는 교육을 84.1% 수강한 것으로 조사됨. 시설장과 시설장 외 종사자 모두 교육비가 없는 교육을 수강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9〉 직원(종사자) 교육비 현황

(단위 : 회,%)

구분		시설장	시설장 외
교육비	유	40(25.3)	91(15.9)
	무	118(74.7)	481(84.1)

- 시설장의 경우 무료 교육이 74.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부담과 기타가 각각 10.8%로 확인되었음. 이 때 기타는 경기도, 지자체, 시청, 협회 등에서 부담한 교육을 포함함.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도 3.2% 있었음. 시설장 외 종사자의 경우는 무료 교육의 비율이 84.1%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 부담 9.6%, 기타 6.1%, 본인 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기타는 시설장과 같이 경기도, 지자체, 시청, 협회 등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됨
- 2011년에는 교육비는 시설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45.1%로 오히려 많았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11.4%나 되었음. 그러나 무료교육이 많아지면서 그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표 III-20〉 직원(종사자) 교육비 부담자

(단위: 회,%)

구분		2022년		2011년
		시설장	시설장 외	전체
교육비 부담자	시설	17(10.8)	55(9.6)	107(45.1)
	본인	5(3.2)	1(0.2)	27(11.4)
	시설+본인	1(0.5)	0	2(0.8)
	무료	118(74.7)	481(84.1)	82(34.6)
	기타	17(10.8)	35(6.1)	16(6.8)

- 운영형태별 직원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실비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무료 교육이 79.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부담 7.9%, 기타 7%로 확인되었음. 이 때 기타는 경기도, 지자체, 시청, 협회 등에서 부담한 교육을 포함함.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0.9%였으며, 시설과 본인이 함께 부담한 경우는 0.4%였음. 무료시설에서 교육비는 무료 교육의 비율이 81.7%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 부담 10.5%, 기타 6.5%, 본인 0.9% 순으로 조사됨

〈표 III-21〉 운영형태별 직원(종사자) 교육비 부담

(단위: 회,%)

구분		실비시설	무료시설
교육비 부담자	시설	18(7.9)	47(10.5)
	본인	2(0.9)	4(0.9)
	시설+본인	1(0.4)	0
	무료	180(79.3)	365(81.7)
	기타	16(7.0)	29(6.5)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무료 교육이 82.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부담 8.5%, 기타 7%로 확인되었음.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0.6%였으며, 시설과 본인이 함께 부담한 경우는 0.1%로 나타남. 공동생활가정에서 교육비는 무료 교육의 비율이 69.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 부담 19.4%, 기타 4.2%, 본인 2.8% 순으로 조사됨.

-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무료 교육에 대한 참여가 많은 것으로 보임
- 공동생활가정은 교육비를 시설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음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에 대체인력을 보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교육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표 III-22〉 시설유형별 직원(종사자) 교육비 부담

(단위 : 회,%)

구분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n=39)	공동생활가정(n=21)
교육비 부담자	시설	57(8.5)	14(19.4)
	본인	4(0.6)	2(2.8)
	시설+본인	1(0.1)	0(0)
	무료	550(82.3)	50(69.4)
	기타	47(7.0)	3(4.2)

(3) 종사자 보수

○ 보수지급

- 임금 지급 기준표²¹⁾에 맞추어 보수가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아니오’ 응답이 78.7% 높게 나타났으며, ‘예’라고 응답한 기관은 21.3%로 조사됨
- 전체의 78.7%가 인건비를 임금지급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22년 현재 인건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승시켰으나 이는 1인 인건비에 해당되며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시설의 필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표 III-23〉 임금지급 기준 준수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예	아니오
개소(%)	13(21.3)	48(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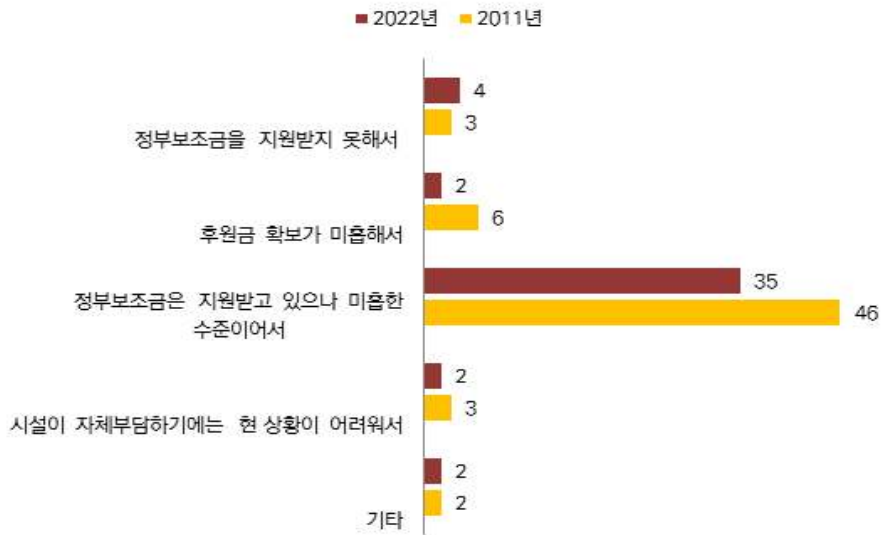
- 임금 지급 기준표에 맞추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정부 보조금은 지원받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어서’ 응답이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1) 장애인시설관리 안내에 제시된 사회복지 종사자보수표를 의미함

- 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서’가 9%로 나타남. ‘후원금 확보가 미흡해서’ ‘시설이 자체부담하기에는 현 상황이 어려워서’, ‘기타’는 4.4%로 동일하게 나타남
- 2011년에도 정부보조금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보수지급이 어렵다는 응답이 2022년과 비슷한 76.7%였음

〈그림 Ⅲ-5〉 임금지급 기준 미준수 사유

(단위 : 개소)



(4) 시설인력 지원

○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력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원받고 있지 않다’가 83.6%, ‘지원받고 있다’가 16.4%로 인력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Ⅲ-24〉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지원받고 있다	지원받고 있지 않다
개소(%)	10(16.4)	51(83.6)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10개소 중 ‘공익요원’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 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 근로 참여자’가 2개 시설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복지 일자리, 기타’가 1개 시설로 동일하게 나타남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경우 공익요원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 5개, 희망근로참여자와 복지일자리 인력을 지원받는 시설이 1개씩 있었음.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도우미²²⁾, 희망근로참여자와, 시니어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 각각 1개씩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25〉 현재 지원인력

(단위 : 개소,%)

구분	공익요원	사회복지 시설도우미	희망 근로참여자	자원봉사자	복지일자리	기타(시니어)
유형별장애인거주시설	5(71.5)	0	1(14.2)	0	1(14.2)	0
공동생활가정	0	1(33.3)	1(33.3)	0	0	1(33.3)
전체(%)	5(50)	1(10)	2(20)	-	1(10)	1(10)

○ 지원희망 인력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 인력으로는 ‘사회복지시설도우미’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타’가 26.5%, ‘자원봉사자’ 6.1%, ‘공익요원’과 ‘희망근로참여자’는 4.1%로 동일하게 나타남. 마지막으로 ‘복지일자리’가 1.6%로 가장 낮게 나타남. 기타의견으로는 정규직 직원, 법정공휴일 및 야간 교대 인력, 24시간 생활지도원 등이 있었음
- 시설유형별로 지원받고 싶은 인력을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시설도우미(46.8%)를 가장 지원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인력(34.3%)을 지원받고 싶어하는 시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공익요원, 희망근로참여자와, 자원봉사자를 지원받고 싶어하는 시설도 각각 6.2%씩임을 확인하였음.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도우미를 지원받고 싶어하는 곳이 76.5%로 대부분이었으며, 기타(11.8%), 자원봉사자(6.1%), 공익요원(4.1%), 희망근로참여자(4.1%), 복지일자리(1.6%) 순으로 지원받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함

22)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사업이란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음. 이에 참여하는 인력을 사회복지시설도우미라 함

-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있고 시설에서 따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도우미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만큼 지속적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는 동안 지자체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표 Ⅲ-26〉 지원 희망 인력

(단위 : 개소,%)

구분	공익요원	사회복지 시설도우미	희망 근로참여자	자원봉사자	복지일자리	기타
유형별장애인거주시설	2(6.2)	15(46.8)	2(6.2)	2(6.2)	0	11(34.3)
공동생활가정	2(11.8)	13(76.5)	0	1(5.9)	1(5.9)	2(11.8)
전체(%)	2(4.1)	28(57.1)	2(4.1)	3(6.1)	1(1.6)	13(26.5)

○ 직원(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 요소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한 조사로는 ‘급여 현실화’가 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타’가 8.2%,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등 보수교육’과 ‘타 시·도 시설을 방문 견학, 비교 벤치마킹 기회 제공’은 1.6%로 동일하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7〉 종사자 사기진작 요소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급여 현실화	52(85.2)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등 보수교육	1(1.6)
타 시·도 시설을 방문 견학, 비교 벤치마킹 기회 제공	1(1.6)
기타	5(8.2)

4) 시설관리 및 행정현황

○ 시설관리 및 행정현황

- 운영위원회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운영하고 있다’가 96.7%(5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운영하고 있지 않다’가 3.3%(2개)로 낮게 나타남
- 운영위원회 실제 수행 역할로는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평가’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 수정' 25%, '시설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관리' 22.1%, '지역사회 자원 개발(지역사회 협력사업) 지원' 8.6%, '재정적 지원 및 자원 발굴' 7.1%, '기타'가 1.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운영위원회 개최 시기로는 '분기별'로 진행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 6.6%, '비정기적' 1.6% 순으로 조사됨

〈표 III-28〉 운영위원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유	59(96.7)
	무	2(3.3)
운영위원회 실제 수행 역할	시설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수정	35(25.0)
	시설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관리	31(22.1)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평가	39(27.9)
	재정적 지원 및 자원 발굴	10(7.1)
	인적자원개발 및 인사관리	11(7.9)
	지역사회 자원 개발(지역사회 협력사업) 지원	12(8.6)
	기타	2(1.4)
운영위원회 개최시기	매월	-
	분기별	52(85.2)
	6개월	4(6.6)
	1년	-
	비정기적	1(1.6)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외 독립된 지원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7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23.0%로 나타남
- 독립된 지원기구의 종류로는 '인권지킴이단'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후원회' 8.8%로 높게 나타났고, '인사위원회'와 '이용인 보호자 모임'은 각각 7.0%로 동일하게 나타남. 마지막으로 '입소판정위원회'가 3.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Ⅲ-29〉 운영위원회 외 지원기구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운영위원회 외 독립된 지원기구 운영현황	유	44(72.1)
	무	14(23.0)
독립된 지원기구의 운영 종류	이사회	2(3.5)
	인사위원회	4(7.0)
	자문위원회	-
	입소판정위원회	2(3.5)
	후원회	5(8.8)
	이용인 보호자 모임	4(7.0)
	인권지킴이단	40(70.2)
	기타	-

○ 관리장부 보유현황

- 관리장부 보유현황은 61개의 기관 중 ‘이용인 입퇴소자 명부’를 가진 기관이 59개로 가장 높았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임을 확인함. 그 다음으로 ‘시설안전점검일지’ 54개, ‘직원관계철’ 53개, ‘회의록철’과 ‘종사자 입퇴소자 명부’는 각각 50개, ‘근무상황부’ 48개, ‘후원자명부’ 47개, ‘문서접수·발송대장’ 46개, ‘차량 운행일지’ 39개, ‘내부기안 문서철’ 34개, ‘사업일지’ 30개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0〉 관리장부 보유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22년	2011년
관리장부 보유현황 (n=61)	직원관계철	53(86.8)	51(81.0)
	회의록철	50(81.9)	22(34.9)
	사업일지	30(49.1)	22(34.9)
	내부기안 문서철	34(55.7)	44(69.8)
	문서접수·발송대장	46(75.4)	52(82.5)
	차량 운행일지	39(63.9)	24(38.1)
	후원자명부	47(77.0)	40(63.5)
	시설안전점검일지	54(88.5)	50(79.4)
	근무상황부	48(78.6)	28(44.4)
	이용인 입퇴소자 명부	59(96.7)	-
	종사자 입퇴소자 명부	50(81.9)	-
	기타	-	-

○ 재무·회계장부 보유현황

- 재무·회계장부는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의 경우 61개 기관 중 60개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관리 대장’ 59개,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와 ‘예산서 및 결산서’는 각각 58개, ‘비품(장비)대장’ 48개, ‘이용인 비용부담 관계서류’ 47개,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34개, ‘비품수불대장’ 31개, ‘기타’ 2개 순으로 나타남

〈표 III-31〉 재무·회계장부 보유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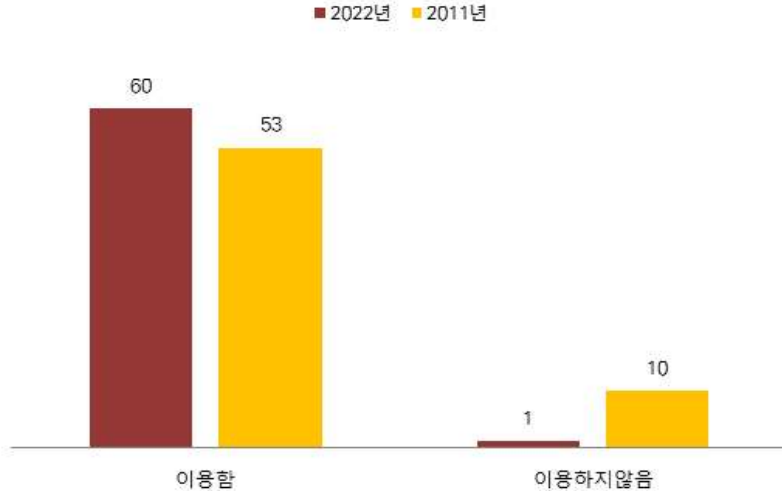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11년
재무·회계장부 보유현황 (n=6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60(98.3)	44(69.8)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58(95.0)	58(92.1)
	예산서 및 결산서	58(95.0)	48(76.2)
	비품수불대장	31(50.8)	14(22.2)
	비품(장비)대장	48(78.6)	40(63.5)
	이용인 비용부담 관계서류	47(77.0)	36(57.1)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34(55.7)	43(68.3)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관리 대장	59(96.7)	47(74.6)
	기타	2(3.2)	2(3.2)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이용여부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이용 여부로는 ‘이용함’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6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용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1개 기관으로 확인됨
- 2011년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15.9%였으나 2022년 현재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III-6〉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이용여부

(단위 : 개소)



○ 시설장 대외활동 현황

- 시설장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조사로는 ‘활동하지 않음’이 67.2%로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함’이 31.1%로 나타남. 시설장이 지역사회 내 활동을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대한적십자봉사회활동 등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 시설장이 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로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관이 95.1%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1.6%로 나타남
- 이는 2011년도와 비슷한 양상이며 오히려 2022년에 시설장의 지역사회 내 활동은 더 줄어든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내에서 시설에 대한 인식제고와 영향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든지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임

〈표 III-32〉 시설장 지역사회 내 활동 여부

(단위: 개소,%)

구분		2022년	2011년
시설장 지역사회 내 활동	유	19(31.1)	27(42.9)
	무	41(67.2)	57.1(57.1)
시설장 타 사회복지시설운영여부	유	1(1.6)	3(4.8)
	무	58(95.1)	60(95.2)

○ 안전관련 보험가입

- 안전관련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로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기관이 54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고배상책임보험’ 47개, ‘차량보험’ 46개, ‘상해보험’ 44개, ‘가스보험’ 21개, ‘기타’ 2개 순으로 나타남

〈표 III-33〉 안전관련 보험가입 여부

(단위: 개소,%)

구분		2022년	2011년
안전관련 보험가입 (n=61)	사고배상책임보험	47(77.0)	35(55.6)
	화재보험	54(88.5)	61(96.8)
	가스보험	21(34.4)	27(42.9)
	차량보험	46(75.4)	53(84.1)
	가입한 보험 없음	-	1(1.6)
	상해보험	44(72.1)	29(46.0)
	종합보험	18(29.5)	9(14.3)
	기타	2(3.2)	2(3.2)

○ 안전설비 설치현황

- 안전설비 설치현황으로는 ‘소화기’가 61개 모든 기관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상구’ 54개, ‘스프링클러’ 44개, ‘방범창’ 21개, ‘방화문’ 20개, ‘소화전’ 18개, ‘완강기’ 11개, ‘배연창’ 6개, ‘방화셔터’ 2개 순으로 나타남
- 2011년과 비교하면 화재위험을 낮추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비상구와 방범창 등도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보임

〈표 Ⅲ-34〉 안전설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22년	2011년
안전설비 설치현황 (n=61)	소화전	18(29.5)	19(30.2)
	스프링클러	44(72.1)	17(27.0)
	완강기	11(18.0)	17.(27.0)
	소화기	61(100)	63(100)
	비상구	54(88.5)	54(85.7)
	방법창	21(34.4)	13(20.6)
	방화문	20(32.7)	-
	배연창	6(9.8)	-
	방화셔터	2(3.2)	-
	기타	-	-

5) 재정 현황

(1) 연간 총 세입/세출

- 연간 총 세입
- 시설마다 이용인의 수, 시·군에서의 지원 등에 따라 세입총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로 부터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확인은 필요함
 - 2021년 시설의 연간 총 세입으로는 보조금 중 국비가 평균 6,693만원, 도비가 평균 5,131만원, 시·군비가 평균 5,916만원으로 보조금만 평균 5,913만원으로 조사됨
 - 보조금 외에 일반수급자 수급비가 평균 12,124만원, 시설자체부담금 평균 22,257만원, 이용인 월이용료 평균 7,839만원, 후원금 평균 5,406만원, 기타 평균 2,312만원으로 보조금+보조금 외 비용을 합한 총 세입은 평균 31,932만원으로 조사됨
 - 재정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무응답의 비율이 높은 편임
 - 무응답 또는 0원으로 표시한 곳을 제외하고 최소값 1,248만원부터 최대값 361,100만원까지 단위의 차이가 너무 크므로 신뢰성을 갖기 어려움

〈표 III-35〉 연간 총 세입

(단위 : 만원)

년도	보조금			일반수급 자수급비	시설자체 부담금	이용인월 이용료	후원금	기타	총 세입
	국비	도비	시·군비						
2022	6,693	5,131	5,916	12,124	22,257	7,839	5,406	2,312	31,932
2011	-	336	759	8,503	2,069	-	4,339	1,324	-

○ 연간 총 세출(2021년 기준)

- 2021년 시설의 연간 총 세출을 분석한 결과 총 지출 금액 33,177만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한 것은 인건비로 27,472만원 그 다음으로 기타 4,145만원, 예비비 2,797, 식비 2,207만원, 기능보강비 1,903만원, 보험료 539만원, 전기요금 552만원, 냉난방비 478만원, 차량유지비 443만원, 프로그램비 345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III-36〉 연간 총 세출

(단위 : 만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인건비	27,472	예비비	2,797
프로그램비	345	기능보강비	1,903
식비	2,207	보험료	539
전기요금	552	차량유지비	433
수도요금	215	여비	64
냉난방비	478	기타	4,145
의료비	230	총 지출	33,177
교육비	122	-	-

(2) 기초생활수급비와 입소보증금

○ 수급비 활용

- 시설이 수급비를 인건비 지급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활용하고 있지 않음’이 8.2%로 많은 시설에서 수급비를 인건비 지급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운영형태별 수급비의 인건비 지급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비시설의 경우에는 수

급비를 인건비 지급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94.1%로 나타났으며, 무료시설의 경우에는 94.7%로 나타나 운영형태와 상관없이 대부분 수급비를 인건비 지급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Ⅲ-37〉 수급비의 인건비 지급 활용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실비시설	무료시설	2022년	2011년
예	32(94.1)	18(94.7)	56(91.8)	57(90.5)
아니오	2(5.9)	1(5.3)	5(8.2)	6(9.5)

○ 입소보증금²³⁾과 입소후원금

- 시설에서 이용인에게 입소보증금을 받는지에 대한 조사로 입소보증금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90.2%(5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입소보증금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9.8%(6개)로 낮게 나타났으며, 입소보증금이 있는 경우 평균 627만원을 입소보증금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운영형태별로 입소보증금 유무를 조사한 결과로는 시설의 경우 입소보증금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3개였으며, 입소보증금이 없는 시설은 31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무료시설의 경우 입소보증금이 있는 시설이 2개, 없는 시설이 17개로 나타남
- 입소보증금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통장에 이체해두었다가 퇴소 시 환불하거나 시설 운영비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38〉 입소보증금 유무

(단위 : 개소,%)

구분	실비시설	무료시설	합계
예	3(8.8)	2(10.5)	6(9.8)
아니오	31(91.2)	17(89.5)	55(90.2)

23) 입소보증금은 이용보증금과 같은 개념으로 1년분의 이용료를 보증금으로 수납하고 퇴소 시 반환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하도록 함
 입소보증금은 또 입주보증금으로도 통하며 2015년 남세현의 연구에서도 약28.4%의 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입소후원금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는 ‘없다’고 응답한 시설이 93.4%(57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3.3%(2개)로 낮게 나타남. 입소후원금 있는 경우 금액은 평균 80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운영형태별로 조사한 결과, 실비시설의 경우 입소후원금이 있는 시설이 31개로 나타났으며, 무료시설의 경우에는 모두 입소후원금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III-39〉 입소후원금 유무

(단위 : 개소,%)

구분	실비시설	무료시설	합계
예	2(6.1)	0	2(3.3)
아니오	31(93.9)	18(100)	57(93.4)

(3) 재정운영

○ 재정운용과 증빙

-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운영하고 있음’이 9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 1.6%로 낮게 나타남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직원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직접 비용을 청구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할 수 있음’이 8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할 수 없음’이 13.1%로 낮게 나타남
- 회계규정과 관련하여 회계규정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갖추고 있음’이 86.9%, ‘갖추고 있지 않음’이 11.5%로 나타남
- 회계규정을 갖추고 있을 경우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수행하고 있음’이 88.5%, ‘수행하고 있지 않음’이 8.2%로 나타남
-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연간 세입항목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작성하고 있음’이 96.7%로 대부분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통장정리, 후원금-금품관리 등의 회계처리를 공식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100%가 공식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
- 후원금 금품관리와 관련하여 후원금-금품의 총액과 사용처를 월 1회 이상 공개(홈페이지, 소식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63.9%가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2.8%가 ‘공개하고 있다’라고 응답함. 이용인 개인별 수령액을 연 1회이상 후원자에

- 계 통보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68.9%가 ‘통보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1.1%가 ‘통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음
- 후원자 관리와 관련하여 후원자 관리에 관한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는 54.1%가 ‘갖추고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42.6%가 ‘갖추고 있지 않음’으로 조사되었음
 - 재정운용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준수 등에 관한 내용은 2011년 대비 2022년 현재 대부분 인식이 달라졌으며 원칙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시설이 늘어났음

〈표 Ⅲ-40〉 재정운용 관련

(단위 : 개소,%)

구분		2022년		201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재정 운용	귀 시설은 연간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이용인 월 이용료, 후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월금 등 포함)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60(98.4)	1(1.6)	53(84.1)	10(15.9)
예산 집행	귀 시설은 직원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직접 비용을 청구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52(85.2)	8(13.1)	52(82.5)	11(17.5)
회계 규정	귀 시설은 회계규정을 갖추고 있습니까?	53(86.9)	7(11.5)	43(68.3)	20(31.7)
	귀 시설은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54(88.5)	5(8.2)	43(68.3)	20(31.7)
회계 감사	귀 시설은 연간 세입항목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59(96.7)	-	43(68.3)	20(31.7)
회계 투명성	귀 시설은 통장정리, 후원금·금품관리 등의 회계처리를 공식적 절차에 의해 처리합니까?	61(100.0)	-	54(85.7)	9(14.3)
후원금 금품관리	귀 시설은 후원금·금품의 총액과 사용처를 월1회이상 공개(홈페이지, 소식지)하고 있습니까?	20(32.8)	39(63.9)	14(22.2)	49(77.8)
	귀 시설은 이용인 개인별 수령액을 연1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보를 하십니까?	42(68.9)	19(31.1)	24(38.1)	39(61.9)
후원자 관리	후원자 관리에 관한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까?	33(54.1)	26(42.6)	22(34.9)	41(65.1)

○ 운영예산

- 시설운영을 위한 현재 예산정도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점 만점에 1.72점으로 나타나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시설의 운영예산 부족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정부지원이 부족해서’가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원금 부족’과 ‘기타’가 각각 2.8%로 조사되었음

- 공동생활가정은 ‘정부지원금이 부족해서’가 100%로 조사됨
- 두 시설 모두 ‘정부지원이 부족해서’가 운영예산 부족의 이유로 조사됨

〈표 III-41〉 운영예산 부족의 이유

(단위 : 개소,%)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정부지원이 부족해서	34(94.4)	19(100.0)
후원금이 부족해서	1(2.8)	-
이용인 월 이용료가 적어서	-	-
시설자체부담금이 부족해서	-	-
기타	1(2.8)	-

- 운영예산이 부족한 경우, 증가해야 하는 재정수입으로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국비’가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비’ 21.6%, ‘기부금/후원금’ 2.7% 순으로 나타남
- 공동생활가정은 ‘국비’가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비’ 33.3%, ‘도비’ 5.6% 순으로 나타남
- 두 시설 모두 증가해야 하는 재정수입으로 ‘국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I-42〉 증가희망 재정수입

(단위 : 개소,%)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국비	28(75.7)	11(61.1)
도비	8(21.6)	1(5.6)
시·군비	-	6(33.3)
민간단체 지원금	-	-
기부금/후원금	1(2.7)	-
이용인 월 이용료	-	-
이용인 입소보증금	-	-
기타	-	-

○ 지원금

- 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받아야 할 지원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증장애인거주 시설’은 ‘인건비 지원’이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프로그램)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기타’가 각각 2.5%로 나타남
- ‘공동생활가정’은 ‘인건비 지원’이 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4.8%로 나타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모두 ‘인건비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기타의견으로는 돌봄인력 지원 등이 있었음

〈표 Ⅲ-43〉 시급한 지원금

(단위 : 개소,%)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원	37(92.5)	20(95.2)
사업(프로그램)비 지원	1(2.5)	-
식비 지원	-	-
수도 및 전기요금 지원	-	-
냉난방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1(2.5)	-
교육비 지원	-	-
기타	1(2.5)	1(4.8)

○ 기초생활수급비 이용료 대체

- 시설의 이용인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이용료로 대체하는지에 대한 조사로 96.7%가 ‘이용료로 대체하고 있음’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하지 않음’은 3.3%로 낮게 조사됨

〈표 Ⅲ-44〉 기초생활수급비 이용료 대체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2022		201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초생활수급비 이용료 대체	59(96.7)	2(3.3)	57(90.5)	6(9.5)

(4) 기초생활수급비 관리

○ 수급비 관리자

- 기초생활수급비를 이용료로 대체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통장 입·출금 관리를 누가하는지에 대한 조사로는 60.7%가 시설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용인 19.7%, 생활지도원 9.8%, 기타 3.3% 로 순으로 조사됨
- 2011년에는 시설이용인이 직접 수급비를 관리하는 하는 경우가 전무하였음

〈표 Ⅲ-45〉 기초생활수급통장 입·출금 관리

(단위 : 개소,%)

구분	이용인	생활지도원	시설장	후원자	기타
2022년	12(19.7)	6(9.8)	37(60.7)	-	2(3.3)
2011년	0 (0.0)	7(11.0)	37(58.7)	0	13(20.6)

(5) 시군의 역할

○ 시·군과 시설 각각에서 필요한 역할

- 시·군에서 필요한 역할로 언급한 것은 보장시설로의 전환, 법인시설과 같은 지원, 직원 인건비와 보조금 지원 현실화, 필요인력에 대한 지원, 지자체, 기업체 혹은 다른 협력기관과의 연계, 기능보강사업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는 의견이었음.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지원, 의료비용지원, 생활지도원 채용 시 자격증 필수를 우대사항으로 변경 등이 있었음
- 시설에서의 역할로는 후원자 발굴 및 관리, 후원금과 물품 모집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1인 1실 준비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6) 이용인 현황

(1) 이용인 일반현황

○ 이용인 수

- 조사결과 61개 기관의 이용인 정원은 총 1,022명이며, 현원은 806명임. 시설이용인 기관평균 정원은 평균 16.8명, 현원으로 평균 13.2명으로 확인됨

〈표 Ⅲ-46〉 이용인 인원

(단위 : 명)

구분		시설 평균	명
이용인 인원	이용인 정원	16.8	1,022
	이용인 현원	13.2	806

- 시설유형별 조사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평균 이용인은 12명이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평균 이용인은 5.4명으로 확인됨
- 법인시설의 경우 공공생활가정은 4인으로 수용인원을 한정짓고 있으나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최소 4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47〉 시설유형별 이용인 인원

(단위 : 명)

구분	운영형태		
	최소	최대	평균
중증장애인시설	4	21	12
공동생활가정	3	12	5.4
지적장애인시설	8	34	8
지체장애인시설	11	22	16
기타	0	1	1

○ 이용인 성별

- 성별로는 남자 60.5%, 여자 36.4%로 남자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48〉 이용인 성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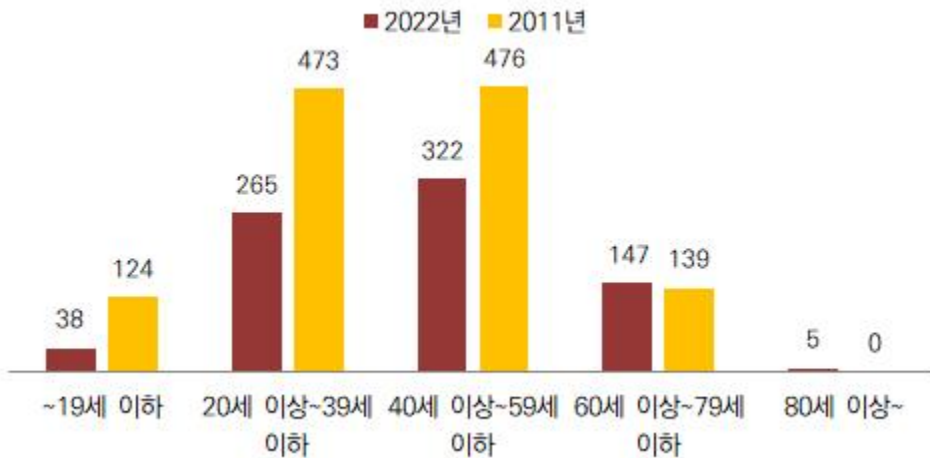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11년
		시설 평균	명	전체
성별	남자	7.9	482(60.5)	810(67.6)
	여자	4.8	290(36.4)	388(32.4)

○ 이용인 연령

- 이용인 평균 연령으로는 40세이상~59세 이하가 4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세 이상~39세 이하가 33.2%, 60세 이상~79세 이하가 18.4%, ~19세 이하가 4.8%로, 가장 이용률이 적은 연령으로는 80세 이상이 0.6%으로 조사됨
- 시설의 이용인 연령은 2011년에는 19세 이하 비율이 10%가 넘었으나 현재는 4.8%로 낮아졌으며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와 50대로 비슷한 양상임

〈그림 III-7〉 이용인 연령

(단위 : 명)



- 시설유형별로 이용인 평균을 살펴본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40세이상~59세 이하에 속하는 이용인이 4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이용인 인원은 5.5명으로 나타났음. 20세 이상~39세 이하(33.2%, 4.4명), 60세 이상~79세 이하(19.6%, 2.6명), 19세 이하(4.8%, 0.6명), 80세 이상(0.5%, 0.1명) 순으로 조사됨. 공동생활가정은 20세 이상~39세 이하의 이용인이 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용인 인원은 2.3명으로 조사됨. 40세 이상~59세 이하(36%, 1.9명), 60세 이상~79세 이하(13%, 0.7명), 19세 이하(6%, 0.3명), 80세 이상(2%, 0.1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9〉 시설유형별 이용인 연령

(단위 : 명,%)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평균	총인원	평균	총인원
평균 연령	~19세 이하	0.6	32(4.8)	0.3	6(6.0)
	20세 이상~39세 이하	4.4	220(33.2)	2.3	43(43.0)
	40세 이상~59세 이하	5.5	278(41.9)	1.9	36(36.0)
	60세 이상~79세 이하	2.6	130(19.6)	0.7	13(13.0)
	80세 이상~	0.1	3(0.5)	0.1	2(2.0)

(2) 입소기간과 입소경로

○ 입소기간

- 평균 입소기간으로는 5년 이하가 2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초과~10년 이하 24.5%, 20년 초과 16.9%, 10년 초과~15년 이하 14.7%, 15년 초과~20년 이하 13.9% 순으로 나타남.

〈표 Ⅲ-50〉 이용인 평균 입소기간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11년
		시설 평균	명	전체
평균 입소기간	~5년 이하	3.4	208(26.1)	455(38.0)
	5년 초과~10년 이하	3.2	195(24.5)	371(31.0)
	10년 초과~15년 이하	1.9	117(14.7)	192(16.0)
	15년 초과~20년 이하	1.8	111(13.9)	138(11.5)
	20년 초과~	2.2	135(16.9)	42(3.5)

- 시설유형별로 이용인 평균 입소기간을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이용인 중 입소기간이 5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25.3%로 가장 높았고, 시설 평균 3.4명임을 확인함. 다음으로는 5년 초과~10년 이하(25.0%, 3.4명), 20년 초과 (19.3%, 2.6명), 10년 초과~15년 이하(15.5%, 2.1명), 15년 초과~20년 이하 (14.9%, 2.0명) 순으로 나타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입소기간이 5년이하인 이용인이 39%로 가

장 많았고, 시설 평균으로 2.1명으로 조사되었음. 다음으로는 5년 초과~10년 이하(32%, 1.7명), 10년 초과~15년 이하(13%, 0.7명), 15년 초과~20년 이하(12%, 0.6명), 20년 초과(4%, 0.2명)의 순으로 조사됨

〈표 III-51〉 시설유형별 이용인 평균 입소기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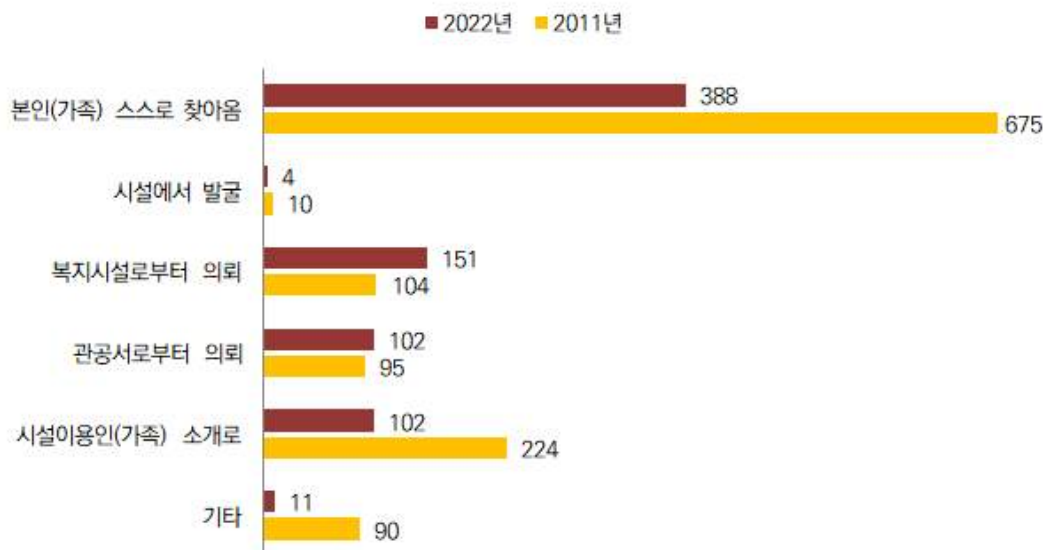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평균	총인원	평균	총인원
평균 입소기간	~5년 이하	3.4	165(25.3)	2.1	39(39)
	5년 초과~10년 이하	3.4	163(25.0)	1.7	32(32)
	10년 초과~15년 이하	2.1	101(15.5)	0.7	13(13)
	15년 초과~20년 이하	2.0	97(14.9)	0.6	12(12)
	20년 초과~	2.6	126(19.3)	0.2	4(4)

○ 입소경로

- 입소 경로로는 본인(가족) 스스로 찾아온 경우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시설로부터 의뢰’ 18.9%, ‘관공서로부터 의뢰’ 12.8%, ‘시설이용인(가족) 소개’ 12.5%,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에서 발굴’이 0.3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용인의 입소경로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이 입소를 원해서인 경우가 가장 많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는 극히 적은 10% 내외임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은 법인시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입소경로가 되며 이에 따라 공공이 시설에 지원을 해야 할 공식적인 의무는 없는 것임

〈그림 Ⅲ-8〉 이용인 입소경로

(단위 : 명)



○ 보호자 유무

- 보호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는 ‘있음’이라고 응답한 이용인이 75.8%로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호자가 없음’은 20.5%로 조사됨

〈표 Ⅲ-52〉 이용인 보호자 유무

(단위 : 명,%)

구분	시설 평균		명
	있음	없음	
보호자 유무	9.9	2.7	604(75.8)
			163(20.5)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로는 83.3%가 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5.7%는 아닌 것으로 조사됨. 시설 평균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가 10.9명, 아닌 경우가 2명으로 확인됨

〈표 III-53〉 이용인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단위 : 명,%)

구분		시설 평균	명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예	10.9	664(83.3)
	아니오	2	125(15.7)

- 시설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이용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85.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4.5%는 아닌 것으로 조사됨. 평균 인원으로는 11.8 명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아닌 경우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인 이용인은 82.2%였으며, 시설 평균 인원은 총 4.2명인 것으로 나왔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17.8%, 시설 평균 0.9명인 것으로 확인됨

〈표 III-54〉 시설유형별 이용인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단위 : 명,%)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평균	총인원	평균	총인원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예	11.8	579(85.5)	4.2	88(82.2)
	아니오	2	98(14.5)	0.9	19(17.8)

(3) 장애유형과 정도

○ 장애유형

- 지적장애를 가진 이용인이 6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시설 평균으로는 8.6명임을 확인함. 그 다음으로는 중복장애(7.9%, 1명), 지체장애(7.8%, 1명), 뇌병변(5.0%, 0.7명), 자폐성장애(4.5%, 0.6명), 시각장애(0.9%, 0.1명), 기타(0.8%, 0.09명), 청각장애(0.4%, 0.05명), 비장애인(0.3%, 0.03명), 언어장애(0.1%, 0.02명)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Ⅲ-55〉 이용인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11년
		시설 평균	명	전체
장애유형	지체장애	1	62(7.8)	150(12.5)
	뇌병변	0.7	40(5.0)	74.(6.2)
	시각장애	0.1	7(0.9)	54(4.5)
	청각장애	0.05	3(0.4)	7(0.6)
	언어장애	0.02	1(0.1)	6(0.5)
	지적장애	8.6	523(65.6)	731(61.0)
	자폐성장애	0.6	36(4.5)	31(2.6)
	중복장애	1	63(7.9)	11(0.9)
	비장애인	0.03	2(0.3)	20(1.7)
	기타	0.09	6(0.8)	94(7.8)

- 시설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이용인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를 가진 이용인이 7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시설 평균으로는 9.2명임을 확인함. 그 다음으로는 지체장애(9.2%, 1.2명). 중복장애(8.4%, 1.1명), 뇌병변(5.4%, 0.7명), 자폐성장애(3.8%, 0.5명) 등의 순으로 조사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지적장애를 가진 이용인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평균 이용인은 3.7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자폐성장애(12.1%, 0.6명), 중복장애(9.3%, 0.5명), 지체장애(3.7%, 0.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이용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56〉 시설유형별 이용인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평균	총인원	평균	총인원
장애유형	지체장애	1.2	58(9.2)	0.2	4(3.7)
	뇌병변	0.7	34(5.4)	0.1	2(1.9)
	시각장애	0.1	7(1.1)	0	0
	청각장애	0.1	3(0.5)	0	0
	언어장애	0.1	1(0.2)	0	0
	지적장애	9.2	443(70.3)	3.7	77(72)
	자폐성장애	0.5	24(3.8)	0.6	13(12.1)
	중복장애	1.1	53(8.4)	0.5	10(9.3)
	비장애인	0.1	2(0.3)	0	0
	기타	0.1	5(0.8)	0.1	1(0.9)

○ 장애정도

- 장애정도로는 ‘심한(1~3등급)’이 89.5%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심하지 않은(4~6등급)’은 1.1%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Ⅲ-57〉 이용인 장애정도

(단위 : 명,%)

구분	시설 평균	명(%)
장애정도	심한(1~3등급)	11.7 713(89.5)
	심하지 않은(4~6등급)	0.1 9(1.1)

- 시설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이용인이 98.9%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평균은 12.8명으로 나타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이용인이 역시 98.1%로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시설평균 5명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I-58〉 시설유형별 이용인 장애정도

(단위 : 명,%)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평균	총인원	평균	총인원
장애정도	심한(1~3등급)	12.8	602(98.9)	5	105(98.1)
	심하지 않은 (4~6등급)	0.1	7(1.1)	0.1	2(1.9)

(4) 장애인 등록여부와 이용료

○ 등록여부

- 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조사로는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97.9%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등록되지 않은 비율은 0.3%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I-59〉 이용인 장애인 등록 여부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11년
		시설 평균	명(%)	전체
장애인 등록 여부	등록	12.8	780(97.9)	1,165(97.2)
	미등록	0.03	2(.3)	33(2.8)

○ 월 이용료

- 시설 이용인의 월 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응답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시설 평균 월 부담금은 82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시설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이용인 월 부담금은 평균 86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77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I-60〉 시설유형별 이용인 월 부담금

(단위 : 만원)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 평균	
			2022년	2011년
이용인 월 부담금	86만원	77만원	82만원	40.18만원

- 운영형태별로 살펴본 결과, 실비시설의 경우 이용인 월 부담금은 평균 78만원이었으며, 무료시설은 88만원으로 조사됨

〈표 Ⅲ-61〉 운영형태별 이용인 월 부담금

(단위 : 만원)

구분	실비시설	무료시설	시설 평균
이용인 월 부담금	78만원	88만원	82만원

7)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프로그램 유형과 비용

○ 프로그램별 운영 주체와 비용

- 61개의 시설 중 13개의 시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보호서비스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이 각각 29개, 27개, 7개이며 외부기관의 예산을 사용하여 운영한 시설이 2개로 조사됨
- 2021년 사용액은 3,101만원이며, 2022년 예정액은 3,402만원으로 확인됨
- 진단판정 중 접수상담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14개, 13개, 3개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 1개로 조사됨
- 진단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7개, 7개, 1개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4개, 3개, 1개임을 확인함
- 판정은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이 5개, 5개, 1개로 나타났고,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4개, 3개, 1개로 확인됨
- 통보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5개, 4개, 1개로 나타났으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4개, 4개, 1개로 조사되었음
- 2021년에 진단판정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 금액은 기관 평균 35만원이며, 2022년 사용예정액은 기관 평균 40만원임

○ 의료재활 프로그램

- 의료재활 중 진료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15개, 5개, 6개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12개, 13개, 7개로 조사됨

- 물리치료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7개, 4개, 2개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6개, 7개, 2개임을 확인함

〈표 III-62〉 프로그램 운영주체와 비용

(단위 : 개,만원)

구분		프로그램 운영주체						비용(만원)	
		본시설			외부기관			2021년 사용액	2022년 예정액
		인력	장소	예산	인력	장소	예산		
보호서비스	단순 수용보호	29	27	7	0	0	2	3,101	3,402
진단판정	접수상담	14	13	3	1	1	1	35	40
	진단	7	7	1	4	3	1		
	판정	5	5	1	4	3	1		
	통보	5	4	1	4	4	1		
의료재활	진료	15	5	6	12	13	7	162,868	431
	물리치료	7	4	2	6	7	2		
	작업치료	3	2	1	3	2	-		
	언어활동	5	4	1	2	2	-		
	미술활동	22	18	10	7	4	2		
	음악활동	15	12	4	3	2	-		
	수중재활	1	-	-	1	1	-		
	재활보조기구사용	4	2	-	-	-	-	770	780
	의료재활상담	1	1	-	3	3	1		
기타	-	2	-	-	-	1			
취업지원	직업상담	3	4	-	4	3	-	76	101
	직업훈련	2	3	-	10	10	2		
	취업준비활동	3	3	-	6	5	1		
	취업알선	3	2	-	1	1	-		
	취업후적응지도	4	2	-	2	2	-		
사회심리재활	재활상담	4	4	-	1	1	-	180	322
	심리상담	12	12	2	3	2	-		
	심리치료	4	2	-	2	2	1		
	원가족방문	16	13	1	1	-	1		
	사회적응훈련	28	24	6	2	2	3		
	자조집단	5	5	-	1	1	-		
	결혼상담	-	-	-	1	1	-		

구분		프로그램 운영주체						비용(만원)	
		본시설			외부기관			2021년 사용액	2022년 예정액
		인력	장소	예산	인력	장소	예산		
	기타	4	3	3	1	2	1		
지역복지	사례관리	3	3	-	1	1	1	228	325
	재가복지서비스	2	2	-	2	2	2		
	가정지원서비스	3	2	-	1	1	-		
	자원봉사자관리	19	14	2	1	-	-		
	후원사업	13	13	2	1	1	-		
	결연사업	3	3	-	1	1	-		
	지역사회조직	6	6	1	2	1	-		
	지역자원활용	7	7	1	2	2	0		
기타서비스	생활체육	19	17	1	11	6	6	225	220
	원예치료	8	6	1	4	2	1		
	기타	-	1	-	1	2	1		
본 시설 프로그램		30	30	17	6	4	1	147	362

- 본 시설의 미술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22개, 18개, 10개로 나타났으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7개, 4개, 2개로 조사되었음. 본 시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음악활동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15개, 12개, 4개로 나타났으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이 3개, 2개로 확인됨
- 2021년에 의료재활 중 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수중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 금액은 기관 평균 162,868만원이며, 2022년 사용예정액은 기관 평균 431만원임
- 의료재활 중 위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재활보조기구사용, 의료재활상담,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2021년 사용액은 기관평균 770만원이며, 2022년 사용예정액은 평균 780만원임

○ 취업지원

- 취업지원 중 직업상담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각 3개, 4개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 4개, 3개로 조사됨

- 직업훈련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각 2개, 3개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10개, 10개, 2개임을 확인함. 가장 많은 시설에서 외부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임
- 취업준비활동은 본 시설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이 3개, 3개로 나타났고,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6개, 5개, 1개로 확인됨
- 취업알선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3개, 2개로 나타났으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 1개씩으로 조사되었음
- 취업 후 적응지도 프로그램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과 장소를 활용하는 시설은 각각 4개, 2개로 확인되었으며, 외부기관의 인력과 장소를 확인하는 시설은 각각 2개인 것으로 나타남
- 2021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 금액은 기관 평균 76만원이며, 2022년 사용예정액은 기관 평균 101만원임

○ 사회심리재활

- 사회심리재활 중 재활상담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각 4개씩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각 1개로 조사됨
- 심리상담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12개, 12개, 2개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각 3개, 2개임을 확인함
- 심리치료는 본 시설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이 4개, 2개로 나타났고,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2개, 2개, 1개로 확인됨
- 원 가족 방문 프로그램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16개, 13개, 1개로 나타났으며, 외부기관의 인력,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 1개씩으로 조사되었음
- 사회적응훈련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과 장소, 예산을 활용하는 시설은 각각 28개, 24개, 6개로 확인되었으며, 외부기관의 인력과 장소, 예산을 활용하는 시설은 각각 2개, 2개, 3개인 것으로 나타남.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중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시설에서 시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임을 확인함
- 자조집단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과 장소를 활용한 시설이 각각 5개였으며, 외부기관의 인력과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1개씩이었음
- 2021년에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 금액은 기관 평균 180만원이며, 2022년 사용예정액은 기관 평균 322만원임

○ 지역복지

- 지역복지 중 사례관리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각 3개씩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1개로 조사됨
- 재가복지 서비스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각 2개씩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각 2개씩임을 확인함
- 가정지원 서비스는 본 시설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이 3개, 2개로 나타났고,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 1개씩으로 확인됨
- 자원봉사자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이 19개, 14개, 2개로 지역복지 프로그램 중 시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후원사업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13개, 13개, 2개로 나타났으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각 1개씩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사회 조직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과 장소, 예산을 활용하는 시설은 각각 6개, 6개, 1개로 확인되었으며, 외부기관의 인력과 장소를 활용하는 시설은 각 2개,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자원 활용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과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이 각 7개, 7개, 1개였으며, 외부기관의 인력과 장소를 활용한 시설은 2개씩이었음
- 2021년에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 금액은 기관 평균 228만원이며, 2022년 사용예정액은 기관 평균 325만원임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중 생활체육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 19개, 17개, 1개이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 11개, 6개, 6개로 조사됨
-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8개, 6개, 1개로 나타났으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시설은 각 4개, 2개, 1개로 조사되었음
-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본 시설의 장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설이 1개 있었으며, 외부기관의 인력과 장소, 예산을 활용하는 시설은 각 1개, 2개,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2021년에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 금액은 기관 평균 225만원이며,

- 2022년 사용예정액은 기관 평균 220만원임
- 16개의 시설이 시설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 시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시설 자체 프로그램 중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30개, 30개, 17개로 확인되며,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각 6개, 4개, 1개로 조사됨
- 2021년에 시설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 금액은 기관 평균 147만원이며, 2022년 사용예정액은 기관 평균 362만원임

(2) 프로그램 계획

○ 장기계획 또는 연간계획 수립

- 시설운영을 위한 장기계획(서비스 제공 및 사업계획 포함) 또는 연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비율이 7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우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은 27.9%로 나타남

〈표 Ⅲ-63〉 장기계획 또는 연간계획 수립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세우고 있다	세우지 않고 있다
개소(%)	43(70.5)	17(27.9)

-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 경우 미수립 이유로는 ‘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8개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5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은 각각 2개로 조사됨

〈표 Ⅲ-64〉 장기계획 미 수립 이유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필요하지 않다	2(3.3)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2(3.3)
계획을 세울 여력 없다	8(13.1)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	5(8.2)
기타	-

○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1순위를 전문인력부족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어려움의 2순위로는 재정 부족을 선택하였고, 3순위를 시설 및 장비의 미흡이라고 응답하였음을 확인함

〈표 III-65〉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단위: 개소)

구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n=39)		공동생활가정(n=21)	
	항목	개소	항목	개소
1순위	전문인력부족	20	전문인력부족	11
2순위	재정부족	17	재정부족	7
3순위	시설 및 장비의 미흡	20	시설 및 장비의 미흡	9

8) 보건의료

(1) 보건교육 실시여부와 내용

○ 이용인 대상 보건교육

- 시설에서 이용인 대상 보건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95.1%(58개)로 대부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실시’는 4.9%(3개)로 낮게 나타남

〈표 III-66〉 이용인 대상 보건교육 실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실시	미실시
이용인 대상 보건교육(%)	58(95.1)	3(4.9)

- 이용인 대상 교육 내용으로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세면·목욕’, ‘화장실 사용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54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식사하기’ 53개, ‘옷 갈아입기’ 52개, ‘성교육’ 50개, ‘기타’ 3개 순으로 나타남
- 기타 교육으로는 코로나감염병예방교육, 약물교육, 소방훈련,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67〉 이용인 대상 실시한 교육 내용(n=58)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54(93.1)
성교육	50(86.2)
세면·목욕	54(93.1)
옷 갈아입기	52(89.6)
화장실 사용하기	54(93.1)
식사하기	53(91.3)
기타	3(5.1)

- 교육 미실시 사유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기관이 2개, ‘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다’,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 가 각각 1개로 나타남

〈표 III-68〉 이용인 대상 교육미실시 사유(n=4)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필요하지 않다	2(66.6)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계획을 세울 여력 없다	1(33.3)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	1(33.3)
기타	-

○ 시설종사자 대상 보건교육 실시 여부

-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 대상 보건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로 ‘실시하고 있다’가 88.5%(54개)로 대부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실시’로는 9.8%(6개)로 나타남

〈표 III-69〉 시설종사자 대상 보건교육 실시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실시	미실시
시설종사자 대상 보건교육	54(88.5)	6(9.8)

- 실시한 교육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규정준수’ 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51개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인 생활 청결유지 방법’ 45개, ‘개인 청결유지 방법’ 43개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가 4개로 가장 낮게 조사됨
- 기타의 경우 코로나감염병 예방교육, 약물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I-70〉 시설종사자 대상 실시한 교육 내용(n=54)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규정준수	51(94.4)
이용인 생활 청결유지 방법	45(83.3)
개인 청결유지 방법	43(79.6)
기타	4(7.4)

-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사유로는 ‘필요하지 않다’, ‘계획을 세울 여력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각각 2개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타’가 각각 1개로 동일한 수치로 조사됨

〈표 III-71〉 시설종사자 대상 실시교육 미실시(n=6)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필요하지 않다	2(33.4)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1(16.6)
계획을 세울 여력 없다	2(33.4)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	-
기타	1(16.6)

○ 재활보조기구 또는 사업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활보조기구를 ‘지원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시설이 98.3%(59개), ‘지원받았다’는 1.7%(1개)로 조사됨. 재활보조기구 설치 사업비 또한 ‘지원받지 않았다’가 60개 기관으로 나타남

〈표 Ⅲ-72〉 재활보조기구 또는 사업비 지원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재활보조기구	지원받지 않았다	59(98.3)
재활보조기구 설치 사업비	지원받지 않았다	60(98.4)

○ 건강검진

- 이용인 대상 정기(연 1회) 건강검진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로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80.3%(49개)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미실시’는 19.7%(12개)로 조사됨

〈표 Ⅲ-73〉 이용인 대상 정기(연 1회) 건강검진 실시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실시	미실시
개소(%)	49(80.3)	12(19.7)

-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이유로는 ‘기타’라고 응답한 기관이 4개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그 중 코로나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2개인 것으로 확인됨. 그 다음으로 ‘이용인의 장애로 인해 건강검진 진행이 불가능’ 3개, ‘지원인력 부족’ 2개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 내 연계 병원이 없어서’, ‘예산 부족’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관이 각각 1개인 것으로 조사됨

〈표 Ⅲ-74〉 건강검진 미실시 이유(n=11)

(단위 : 개소,%)

구분	2022년	2011년
지역 내 연계 병원이 없어서	1(9.0)	0(0.0)
지원 인력이 부족	2(18.0)	4(30.8)
필요하지 않아서	-	1(7.7)
예산이 부족	1(9.0)	0(0.0)
이용인의 장애로 인해 건강검진 진행이 불가능	3(27.0)	4(30.8)
기타	4(37.0)	4(30.8)

9) 지역사회관계

○ 지역사회 내 특정기관 연계

- 시설이 지역사회 내 특정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는 ‘병원’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50개로 나타나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이용횟수는 23.2회로 확인되었음. 그 다음으로 ‘보건소’ 38개, 7.7회, ‘근린공원’ 23개, 58.2회, ‘자원봉사센터’ 22개, 5.1회, ‘경찰서(파출소)’ 21개, 2.2회, ‘문화시설(박물관, 공연장 등)’ 14개, 4.3회, ‘장애인복지관’ 12개, 22.7회, ‘기타’ 10개, 6.1회, ‘체육시설’ 7개, 42.7회, ‘도서관’ 3개, 7.3회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정보센터’가 2개, 5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기타 기관은 군사령부, 극장, 재활원, 보호작업장, 자립센터 등이 있었음

〈표 III-75〉 지역사회 내 특정기관 연계(n=55)

(단위 : 개소,%)

연계기관	2022년		2011년
	연평균 이용횟수	개소	
보건소	7.7	38(69.0)	50(79.4)
병원	23.2	50(90.9)	51(81.0)
자원봉사센터	5.1	22(40.0)	37(58.7)
장애인복지관	22.7	12(21.8)	16(25.4)
경찰서(파출소)	2.2	21(38.1)	23(36.5)
도서관	7.3	3(5.4)	8(12.7)
문화시설(박물관, 공연장 등)	4.3	14(25.4)	28(44.4)
체육시설	42.7	7(12.7)	14(22.2)
교육정보센터	5	2(3.6)	4(6.3)
근린공원	58.2	23(41.8)	20(31.7)
기타	6.1	10(18.1)	-

○ 자원봉사자

- 시설 내 자원봉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73.8%(45개)로 ‘없음’ 26.2%(16개)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의 수는 기관 당 평균 53.4명으로 조사됨
- 자원봉사자 유무는 2022년 현재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2011년 93.7%에 비하면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76〉 자원봉사자 유무

(단위 : 개소,%)

구분	유	무
2022년	45(73.8)	16(26.2)
2011년	59(93.7)	4(6.3)

-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우 주로 어떤 일에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1순위로 ‘이·미용’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11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청소’라고 응답한 시설이 10개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함. 3순위로는 ‘외출 및 야외활동 보조’라고 응답한 시설이 1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77〉 자원봉사자 도움

(단위 : 개소)

구분	항목	개소
1순위	이·미용	11
2순위	청소	10
3순위	외출 및 야외활동 보조	10

10)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 의견

○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 만족도

-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정책 만족도로는 5점 만점에 1.92점으로 나타났음
- 개인운영시설은 지속적으로 법인시설과 비교하여 국비나 지자체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영향으로 정책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Ⅲ-78〉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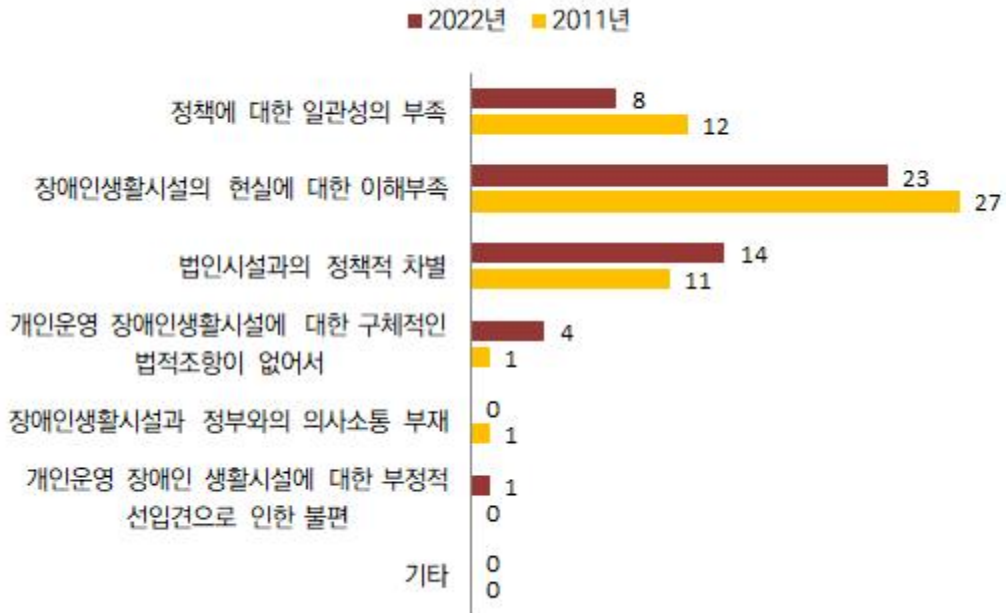
구분	만족도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정책 만족도	1.92

○ 불만족 사유

- 정책 불만족 이유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인시설과의 정책적 차별’이 28%, ‘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 16%,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조항이 없어서’ 8%로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한 불편’이 2%로 나타남

〈그림 Ⅲ-9〉 정책불만족 사유

(단위: 개소)



○ 법적기준 준수 여부

- 시설 및 시설 종사자 등의 법적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준수한다’라고 응답한 시설이 85.2%(52개)로 높게 나타났으며, ‘준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한 시설이 14.8%(9개)로 나타남
- 2011년과 비교하여 2022년 현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비율이 약 12%p 상승하여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Ⅲ-79〉 시설 및 시설 종사자의 법적 기준 준수

(단위 : 개소,%)

구분	예	아니오
2022년	52(85.2)	9(14.8)
2011년	46(73.0)	17(27.0)

-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시설 중에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종사자 확보’에 대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한 시설이 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시설이 3개로 조사됨

〈표 Ⅲ-80〉 법적기준 갖추지 못한 구체적 내용(n=9)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시설·설비기준	3(33.3)
종사자 확보	6(66.6)
시설장 자격기준	-
입소 기준	-
기타	-

○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대상 교육 관련

-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이 82.0%(50개)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 (18.0%, 11개)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81〉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대상 교육 필요

(단위 : 개소,%)

구분	예	아니오
개소(%)	50(82.0)	11(18.0)

- 시설장들을 위한 교육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으로는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운영방법’ 36%, ‘회계’ 1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6% 순으로 나타남

〈표 III-82〉 시설장 대상 필요한 교육

(단위 : 개소,%)

구분	2022년	2011년
시설운영방법	18(36.0)	22(37.9)
회계	8(16.0)	7(12.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6.0)	1(1.7)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	21(42.0)	25(43.1)
기타	-	3(5.2)

○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 항목

-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인건비 지원과 이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많음
- 시설 내 인력충원에 대한 의견도 보였음. 인력에 대한 예시로 돌봄인력지원, 야간돌봄인력, 병원동행, 예비인력 등이 있었음. 인력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외 환경미화, 조리 등 별도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시설개보수 혹은 차량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이용인과 생활지도원 대상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지적을 위한 지도점검이 아닌 지자체에서 원하는 수준의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규정, 법령, 지침과 관련한 구비서류의 구체적인 서식과 예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3. 소결

□ 일반현황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유형은 지적장애인시설이 줄어들고 공동생활가정의 비율이 높아짐
 - 장애인 생활시설의 시설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 시설이 26개(42.6%)로 가장 많았고, 공동생활가정이 21개(34.4%), 중증장애인시설이 10개(16.4%), 지체장애인시설이 3개(4.9%)로 확인됨
- 운영형태는 실비시설이 33개(55.7%), 무료시설이 19개(31.1%)로 확인됨
 - 공동생활가정은 응답한 18개소 전수가 입소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실비시설이고 지적장애인시설이 대부분 무료시설로 응답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비시설과 무료시설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응답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를 받지 않는 시설 유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할 수 없는 여건 등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함
 -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은 이용자의 이용료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며 조례에 의하면 시설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건강검진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건물, 자동차 등 자산의 소유 비율은 다소 줄었으며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은 줄어들고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졌음
 - 자동차 보유차량은 2011년에는 80.9%가 시설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5.6%만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함
 - 건물형태로는 단독주택이 36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7개, 아파트 5개, 기타 5개, 상가건물 4개, 가설건축물 1개의 순으로 확인됨

□ 직원(종사자) 현황

- 종사자 정원은 시설 평균 6명, 현원은 5.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영형태 별로 분석하였을 때, 무료시설의 종사자 현원 평균 인원이 6.7명으로 실비시설 종사자 평균인 3.8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종사자 인원은 대체로 줄어들었음.

- 종사자의 연령은 20~30대는 조금 줄어들었으며 60~70대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음
 - 20~30대는 2011년 19.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7.2%로 나타났으며 60~79세까지의 종사자는 15.8%에서 36.9%로 크게 늘었음
 - 40~59세 사이의 종사자 비율도 64.3%에서 44.9%로 줄었는데 이는 지난 조사에서 응답한 종사자가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하였다면 자연 고령화된 결과로 예측할 수 있음
- 시설장의 친인척이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는 다소 줄어들었으며 근무유형은 시설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음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상근인원이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주하는 인원이 0.7명, 비상근 인원이 0.3명으로 확인되었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상근하는 인원이 1.3명으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비해 적은 편이었으며, 상주인원은 0.7명, 비상근인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생활시설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은 37.5%에서 15.4%로 줄어들었으며 비상근은 13.7%에서 4.3%로 감소하였음
- 시설유형별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5년 이하 근무자가 각각 시설 당 평균 2.2명, 0.6명으로 가장 많았음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5년 초과 10년 이하(1.1명), 20년 초과(0.7명), 10년 초과 15년 이하(0.6명), 15년 초과 20년 이하(0.3명) 순으로 나타났음. 공동생활가정은 10년 초과 15년 이하(0.4명), 5년 초과 10년 이하, 15년 초과 20년 이하(0.3명), 20년 초과(0.3명)의 순으로 확인됨
-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68.6%,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31.4%로 확인되었음
 - 기관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자격증을 가진 평균 인원이 3.4명, 없는 인원이 1.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조무사(33명), 요양보호사(26명),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19명)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자격증 보유자는 210(61.4%)였으나 2022년에는 68.6%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요구가 많아짐에 따른 결과로 보임

-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은 시설 평균 4.7명(97.2%)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무급 직원은 시설 평균 0.1명(2.8%)임을 확인함
 - 2011년에는 종사자가 무급으로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6.6%나 되었으나 현재로서는 2.8%로 줄어들었음
- 직원의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별 1인당 평균값으로 계산하였을 때 시설장은 2.6회, 총 15시간, 시설장 외 직원은 3.3회, 총 17.7시간의 교육을 받았음
 - 2011년과 비교하여 1인당 교육시간이 시설장은 15시간으로 늘어났으나 시설장 이외 종사자의 경우는 오히려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줄어들었음
 - 시설장(85.9%)과 직원(85.9%)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는 병행, 오프라인의 형태로도 각각 교육을 수강하였음
 - 시설장의 경우 교육비가 있는 교육을 수강한 경우가 25.3%였으며, 무료 교육을 수강한 경우가 74.7%로 나타남.
 - 시설장 외 직원의 경우 시설장보다 무료 교육을 수강한 경우(84.1%)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9%는 교육비가 있는 교육을 수강하였음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마련과 교육비용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운영형태별 직원 교육비 부담 주체를 확인한 결과, 실비시설은 무료 교육이 79.3%, 시설이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가 7.9%, 기타(7%), 본인(0.9%)이 부담하였음
 - 시설과 본인이 함께 부담한 경우가 0.4%로 확인되었으며, 무료시설의 경우 무료 교육을 수강한 경우(81.7%)가 실비시설의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시설이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10.5%)도 실비시설보다 조금 더 많았음. 다음으로 기타(6.5%), 본인(0.8%)로 조사됨. 이 때 기타의 경우, 경기도, 지자체, 시청, 협회 등에서 교육비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됨
- 임금지급 기준표에 맞추어 보수를 지급하는 시설은 21.3%였으며, 기준표를 지키지 못하는 시설은 78.7%인 것으로 확인됨
 - 임금 지급 기준표에 맞추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7.7%로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함

- 다음으로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서(9%), 후원금 확보의 미흡, 시설 자체부담이 어려움, 기타 (4.4%) 순으로 드러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3.6%의 대부분의 기관이 인력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경우 공익요원 5명, 희망근로참여자와 복지 일자리 인력을 각각 1명씩 지원받고 있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도우미, 희망근로 참여자, 시니어 인력을 1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인력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46.8%)과 공동가정 생활(76.5%) 모두 사회복지 시설도우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경우 기타 인력(34.3%), 공익요원과 희망근로참여자, 자원봉사자(6.2%) 순으로 희망하는 것을 확인함
 - 공동생활가정은 기타와 공익요원(11.8%), 자원봉사자와 복지일자리(5.9%)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타인력은 정규직 직원, 법정 공휴일 및 야간 교대 인력, 24시간 생활지도원, 돌봄인력 등이 있음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급여 현실화가 85.2%로 대부분임
 - 기타 (8.2%), 각종 교육 및 워크숍 등 보수교육, 타 시설 방문견학, 벤치마킹 기회 제공이 각각 1.6% 순으로 확인됨. 기타 의견으로 교대근무, 충분한 인력 확보, 대체인력 지원 등 인력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 시설관리 및 행정현황

- 관리장부 보유현황은 2011년 대비 2022년에는 모든 서류들을 구비하고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시설 내부의 회의록과 안전점검 일지를 보유한 비율이 높아졌음. 또한 이용인의 입퇴소자(96.7%)와 종사자의 입퇴소(81.9%)를 기록한 명부를 통해 시설 내부인에 대한 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시설안전점검일지 54개, 직원관계철 53개, 회의록철과 종사자 입퇴소자 명부는 각각 50개, 근무상황부 48개, 후원자명부 47개 등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부임을 확인함

- 재무회계장부 또한 2011년에는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산에 관한 소유권 증빙서류 등은 보유비율(55.7%)이 오히려 낮아진 경향이 있음
 -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관리 대장 59개,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와 예산서 및 결산서는 각각 58개, 비품(장비)대장 48개, 이용인 비용부담 관계서류 47개를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60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관인 1개로 확인됨
 - 2011년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15.9%였으나 2022년 현재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도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으로서 시스템에 등록되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시설장의 지역사회 내 활동여부는 시설이 가지는 네트워크 또는 인적, 물적 인프라의 확보와 연관이 있음
 - 시설장의 지역사회 내 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활동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13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설이 41개임을 확인하였으며, 시설장이 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1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58개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시설장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 분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안전보험 가입은 2011년 대비 대체로 비율이 높아졌으나 화재보험, 차량보험의 비율은 다소 낮아졌음
 - 시설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화재보험이 5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고배상책임보험 47개, 차량보험 46개, 상해보험 44개, 가스보험 21개, 기타 2개 순으로 나타남
 - 이용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의 안전관련 보험을 가능한 가입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운영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재정 현황

- 연간 총 세입에서 보조금의 유형 및 금액은 2011년과 다른 점이 있으나 보다 정확한 내역은 시설별로 검토가 가능해야 확신할 수 있음

- 2021년 시설의 연간 총 세입으로 보조금 중 국비가 평균 6,693만원, 도비가 평균 5,131만원, 시·군비가 평균 5,916만원으로 조사됨
- 보조금 외에 시설자체부담금 평균 22,257만원, 일반수급자 수급비가 평균 12,124만원, 이용인 월이용료 평균 7,839만원, 후원금 평균 5,406만원, 기타 평균 2,312만원의 순으로 세입이 계산되었으며, 연간 총 세입은 31,932만원으로 조사됨
- 2021년말 기준 시설의 연간 총 세출을 분석한 결과 총 지출 금액 33,177만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한 것은 인건비로 27,472만원이었음
 - 기타 4,145만원, 예비비 2,797, 식비 2,207만원, 기능보강비 1,903만원, 보험료 539만원, 전기요금 552만원, 냉난방비 478만원, 차량유지비 443만원, 프로그램비 345만원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 이용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를 인건비로 활용하는 시설은 91.8%에 달하며 2011년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 시설 운영형태별로 수급비를 인건비에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실비시설(94.1%)과 무료시설(94.7%) 대부분 수급비를 인건비 지급에 활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함
-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할 때 입소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실비시설(91.2%)과 무료시설(89.5%)의 대부분은 입소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소보증금이 있는 경우, 평균 627만원으로 확인되었음
 - 입소보증금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퇴소 시 환불하거나 시설 운영비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입소후원금의 경우 실비시설의 경우 91.2%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무료시설의 경우에는 입소후원금을 받는 시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함. 후원금이 있는 경우 평균 80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시설운영을 위한 현재 예산의 충분정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1.72점으로 비교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기관이 9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생활가정은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관이 100%인 것으로 확인됨
 - 부족한 운영예산 중 증가되어야 하는 재정수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국비가 75.7%, 도비가 21.6%, 기부금/후원금이 2.7%라고 응답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은 국비 61.1%, 시·군비 33.3%, 도비 5.6%로 나타남.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국비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받아야 하는 지원금으로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시설이 92.5%로 대부분이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도 인건비 지원이 95.2%로 대부분이었음을 확인함
- 시설의 이용인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이용료로 대체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 시설이 96.7%로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음
 - 기초생활수급비를 이용료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 통장 입·출금 관리는 시설장이 하는 경우가 60.7%, 이용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19.7%, 생활지도원 9.8%, 기타 3.3%의 순으로 확인됨
 - 원칙대로라면 수급비를 이용료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나 편의상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이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일은 불가능함
- 시·군에서 필요한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장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인시설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직원 인건비와 보조금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시설도 많았으며, 필요인력에 대한 지원에 대해 요구하는 시설도 있었음
- 시설에서 해야 하는 역할로는 후원자 발굴 및 관리, 후원금과 물품 모집 및 관리 등과 같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재정확보에 대한 역할과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와 같이 시설에서 이용인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용인 현황

- 시설 이용인을 조사한 결과, 이용인 정원은 시설 평균 16.8명이었으며, 이용인 현원은 13.2명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평균 이용인은 17.3명이었고, 공동생활가정의 평균 이용인은 5.5명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에서 보다는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는 이용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이용인 평균 입소기간은 5년 이하와 5년 초과 10년 이하가 시설 당 3.4명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년 초과가 2.6명,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2.1명, 15년 초과 20년 이하가 2.0명으로 나타났음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인 이용인이 2.1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1.7명, 10년 초과 15년 이하 0.7명, 15년 초과 20년 이하 0.6명, 20년 초과가 0.2명으로 나타남
- 이용인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이 시설에 찾아와 입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이용인의 입소경로는 본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찾아온 경우가 기관 평균 6.4명, 복지시설로부터 의뢰를 받고 입소한 경우가 2.5명, 관공서로부터 의뢰, 시설 이용인 소개인 경우가 각각 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용인 중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시설 평균 9.9명이며, 없는 경우가 2.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10.9명, 아닌 경우가 2명으로 확인됨
-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이용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이용인이 시설 평균 12.8명이었으며, 심하지 않은 경우가 0.1명이었음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심한 경우가 5명, 심하지 않은 경우가 0.1명인 것으로 확인됨. 장애인 등록한 이용인은 시설평균 12.8명으로 이용인 대부분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설유형별로 이용인 월 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경우 평균 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생활가정은 77만원으로 확인되었음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보호서비스 중 단순 수용보호 프로그램의 경우 본 시설에서 인력, 장소, 예산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1년 사용액은 3,301만원이며, 2022년 사용예정액은 3,402만원으로 나타남
- 의료재활 중 미술활동과 음악활동, 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매우 많았으며, 진료의 경우에는 장소는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지원은 본 시설보다 외부기관의 인력, 장소,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직업훈련과 취업준비활동의 경우 인력, 장소, 예산 모두 외부기관에서 운영 주체가 된 경우가 많았음
- 사회심리재활 중 사회적응훈련과 원가족 방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매우 많았음
 - 이 경우에는 본 시설의 인력, 장소,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시설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도 30개 정도로 확인됨
- 시설 운영을 위해 장기계획이나 연간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설은 43개였으며, 그렇지 않은 시설은 17개로 나타났음
 -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로는 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다고 응답한 시설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고 응답한 시설이 5개,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시설은 각각 2개로 확인됨
-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 1순위로 전문인력 부족, 2순위로 재정부족, 3순위로 시설 및 장비의 미흡을 선택하였음

□ 보건의료와 지역사회관계

- 재활보조기구를 지원받지 않은 시설이 98.3%로 대부분이었으며 재활보조기구 설치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검진의 경우 이용인 대상으로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49개, 실시하지 않는 시설이 12개인 것으로 나타남
 -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타가 4개로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2개였음. 다음으로 이용인의 장애로 건강검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3개, 지원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2개, 지역 내 연계병원이 없거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각각 1개씩인 것으로 드러남
- 지역사회 내 특정기관과 연계는 주로 보건소 38개, 근린공원 23개, 자원봉사센터 22개, 경찰서 21개 등으로 나타남
- 시설 내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우는 45개, 없는 경우 16개였으며 자원봉사자 수는 기관 당 평균 53.4명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우 도움받는 1순위는 아·미용이었으며, 2순위 청소, 3순위 외출 및 야외활동 보조로 나타남

□ 장애인생활시설 정책

-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정책 만족도는 5점 중 1.92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정책 불만족의 이유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7.7%, 법인 시설과의 정책적 차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 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 13.1%,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없어서 6.6%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시설 및 시설 종사자 등의 법적 기준을 갖추었는지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85.2%(52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한 시설이 14.8%(9개)로 나타남
 - 준수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종사자 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이 6개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이 3개로 조사됨
-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이 82%, 필요 없다고 응답한 시설이 18%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운영방법 36%, 회계 1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6% 순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인건비 지원 증액과 시설 내 인력 충원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충원이 필요한 인력으로는 돌봄인력, 야간돌봄인력, 병원동행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외에도 환경미화, 조리 등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설도 있었으며, 시설 환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용인과 생활지도원 대상의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규정, 법령, 지침에서 이야 기하는 구비서류의 구체적인 서식과 예시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IV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1. 연구요약 및 합의
2. 시설의 운영전략
3.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방향

IV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전략 및 정책방향

1. 연구요약 및 함의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미신고 시설부터 단계별로 변화되고 있음
 - 경기도에는 2021년 말 기준 장애유형별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85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2011년 개인운영 시설 전수 63개소를 대상으로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22년 현재의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전략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구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하여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함
- 타 시·도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지원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고 장애인거주시설과 구분하고 있음
 - 강원도, 서울, 세종시, 인천,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등은 조례의 목적에서부터 명확하게 개인운영시설을 명시하여 법인시설과의 차별성을 둠
 - 경기도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로 통칭하여 법인시설과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에 시·군과 함께 연간 7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시군과 10~50%로 매칭하여 시설별 최소 7,400(천원)부터 최대 53,200(천원)을 지원하므로 지역사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 2011년 조사한 내용과 기본조사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2022년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하였음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 지적장애인시설 33개소, 중증장애인시설 5개소, 지체장애인시설 4개소, 시각장애인시설 1개소로 총 8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최종 응답한 61개소의 조사내용을 분석하였음
- 일반현황
 - 다른 유형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줄고 공동생활가정이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50% 이상을 차지함
 - 건물, 자동차 등 자산의 소유 비율은 다소 줄었으며 주거형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졌음
 - 운영형태는 실비시설과 무료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이 전수 실비시설로 응답하였음
- 종사자와 이용인 현황
 -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은 대체로 그 수가 적어졌으며 종사자의 연령은 20~30대는 줄어들었으며 60~70대 비율이 늘어났음
 - 시설장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비율은 줄어들었으며 근로 기간은 5년이상~10년 미만 이 가장 많음.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자격증을 가진 비율은 68.6%로 상승하였음
 - 종사자의 교육시간이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오히려 줄어든 경향이 있으며 보수는 임금지급기준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78.7%에 달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인력은 대부분 공익요원을 그나마 전체의 16.4%에 그치고 필요로 하는 인력은 사회복지시설도우미로 실질적 도움을 받고자 함
 - 종사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급여 현실화였으며 기타로는 타 시설의 방문견학, 교대 근무, 대체인력지원 등이 있음
 - 시설에 입소한 경로는 주로 개인과 가족이 시설에 찾아와 입소한 경우가 많고 월 평균 약 89만원, 77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설관리 및 행정

- 행정업무에서 중요한 서류들은 2011년 대비 전반적으로 구비·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회의록과 안전점검일지 등 중요성이 높은 서류의 비율이 높아짐
- 또 이용인과 종사자 등의 입퇴소 관리 장부를 관리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장의 외부활동은 줄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설장의 지역사회 내 활동은 시설이 가지는 네트워크 또는 인적, 물적 인프라의 확보와 연관이 있으므로 활발한 활동을 위한 노력 필요
- 보험가입 비율이 높아졌으나 화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가입의 비율이 낮아졌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정

- 연간 총 세입액은 늘어났으나 정확한 수치로 신뢰하기 어렵고 경기도와 시군의 보조 금액이 증가한 것은 분명함
- 이용인의 수급비를 인건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이용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를 이용료로 대체하고 있는 시설이 96.7%이며 통장 관리하는 시설장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프로그램

- 이용인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단순수용에 가장 많은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술활동, 사회적응훈련, 생활체육 등의 비율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음
-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어려움 1순위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며 재정, 장비 미흡 등을 들고 있음

○ 정책만족도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1.92점이며 그 이유로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많음
-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지자체가 개인운영 시설을 위해서는 인건비 증액지원과 시설 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합의

- 경기도 내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결정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2011년과 비교하여 2021년 현재 변화된 사항을 짚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향후 지역사회 내 시설에서의 장애인 돌봄 방향 또한 전환되고 있음
 - 지적장애인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감소하고 소규모 생활시설로 공동생활가정의 비율이 높아짐
-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개인운영 시설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다른 형태임을 확인함
 - 지원대상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함
 - 경기도 조례에서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을 정의하고 조례목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매칭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시설과는 차이가 있으나 시설이 많은 경기도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급격히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1년과 비교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상향된 것을 확인함
 - 운영주체가 바뀌기 전에는 동일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지원책부터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개인운영시설들은 법적기준을 맞추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로 시설운영 및 행정 현황에서 크게 발전한 내용을 확인하였음
- 그러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종사자의 교육시간이 줄거나 화재보험 가입 비율이 감소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음
- 예산/비에산적 측면을 포괄하여 개인운영 시설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운영 전략과 경기도와 시·군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할 수 있음

2. 시설의 운영전략

□ 시설홍보와 서비스 정보공유

- 경기도 내 85개²⁴⁾의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이행 노력이 필요함
 - 공동생활가정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을 검색하였을 때 홈페이지 또는 카페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함
 - 2022년 현재에도 시설의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SNS 포함)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85개소 중 27개소(31%)에 불과하며 홈페이지가 있어도 운영되지 않는 곳이 7개소, 아예 소개매체가 없는 곳이 58개소임
 - 시설의 존재와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프로그램 등 공유해야 할 정보가 탑재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 이용인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증명할 방안이 됨
- 경기도 내 개인운영 시설의 운영조건을 법인과 동일하게 맞춘 법정시설 사이에서 구성된 법정시설협회가 있으나 이 또한 정보가 없음
 -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의 정보가 있으나 이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한하며 개인운영시설은 회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신속히 협회의 형태를 갖추고 시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써 기능하고 있는 시점에 필요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는 장애인시설협회에 공동생활가정까지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경기도 협회는 공동생활가정이 빠져있으며 더구나 개인운영 시설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음
 - 경기도 내 운영주체 개인인 시설만 회원이 되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하며 유형별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정보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대표단체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통해 시설들의 권익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교육훈련의 기획, 정책의 변화, 경기도와 지자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을 담당할 수 있는 이익단체를 조직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체적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24) 2022년 7월 현재는 81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하여 지원하는 시설은 77개소임

□ 종사자 역량강화

- 2011년과 비교하여 종사자의 교육시간에 변화가 거의 없는 조사결과는 시설장 이외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함
 - 1인당 교육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시설의 환경 및 인건비 상황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시설 내 입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황조사 결과는 2022년 현재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또는 시·군 내 타 시설이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에 종사자를 참여토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주는 공모사업 등을 제안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
 - 급여현실화 이외에 타 시설 방문견학, 벤치마킹 기회제공 등 각종 교육훈련에 대한 의견을 반영

□ 서비스 최소기준²⁵⁾ 확인 및 준수

-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조건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서비스 최소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법인시설이 평가를 받을 때 지표의 핵심이 되는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규정에 있는 기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함
 - 개인운영시설은 법정조건을 법인시설과 유사하게 만족했고 서비스에도 차이가 없다면 서비스 최소기준을 준수하는데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를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음
- 생활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보험가입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의 안전관련 보험을 가능한 가입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운영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25)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관리 안내 참고

3.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방향

□ 조례제정 및 개정

- 경기도는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히 개인운영 시설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법정시설이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법인시설이 된 경우의 사업운영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장애인복지법 등의 적용을 받아 전국이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받음
 -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법적근거와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의 종류와 명칭통일

-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운영시설로 구분하는 시설의 명칭을 시설 당사자들과 통일하여 사용, 정리해야 함
 - 이와 같은 시설유형은 노인복지시설 등 타 시설범주에는 없으며 보건복지부 일람표에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포함하여 참고사항에 주체를 구분하는 정도임
 - 개인운영시설, 법정시설, 개인신고시설 등 정책논의와 결정에 혼란은 야기하는 명칭을 정확히 통일, 법인시설과 구분되는 공식명칭을 행정문서 등에 사용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 모든 상황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개인인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로 법인시설, 개인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지원과 성과관리 방안 마련

- 대체인력 파견사업, 기능보강지원 등 시설에서 급선무로 요구하는 또는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 조사결과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등 단기간이라도 종사자의 역할을 대체해 줄 인력을

-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과 같은 유형을 사업을 실시,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기능보강지원은 시설 내 건축물 개보수나 설비자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소멸성 자산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에서의 지원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냉난방기구를 직접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은 자산취득의 의미가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으며 냉·난비, 안전관련 보험료를 지출할 때 대체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화재보험가입 비율이 88.5%, 차량보험 가입 75.4%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보험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함

□ 우수시설 및 종사자 지정 표창

- 장기근속 종사자가 많은 시설, 시·군 지도·점검 결과에서 시정조치 등이 없는 시설 등을 우수시설로 지정 포상할 수 있음
- 조사에서 5년 이하 근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향후 이직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가 장기 근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기근속자가 많은 시설, 프로그램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우수시설로 지정 표창함
-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시설차원, 지자체 차원의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포상하고 대형 사회복지시설과의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음

□ 시설운영 지원

- 이용자 수와 종사자 수가 많은 지적장애인시설과 1인 종사자가 4~12명의 소수를 돌보는 시설의 조건이 같을 수 없음
- 중증장애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의 규모와 종사자 수에 따른 형태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대체인력제공 역시 시설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배치할 수 있음
-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근무 수당 등 비 인건비성 비용을 이용자 규모와 시설의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함

- 시설장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마련과 필요로 하는 영역에의 컨설팅 연계 등 가능함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시설에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지원 사업으로 누림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기회를 활용할 수 있음
 - 법인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과 컨설팅은 이미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운영주체 구분 없이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2011년과 유사하게 회계 영역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특화사업을 구상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내용 등을 벤치마킹하거나 교류를 통한 운영 경험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들과의 교류의 장을 열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 소규모시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등을 계획하고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을 우선 선정하는 등 간접지원을 방안으로 모색해야 함
 - 전문인력에 대한 부족을 운영의 어려움을 꼽고 있는 시설에서 전체 시설들과 경쟁하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야 함
 - 자동차 지원대상 공모사업, 경기도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단위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중증장애인이 이용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수행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특화사업 수행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명선(2015).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관리체계 특성 비교분석 -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 (MSSD)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4(1): 93-118.
- 김일주(2010).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유정(2008). 『개인운영시설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세현(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2022).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유정원(201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경기복지재단
- 비마이뉴스(2017.8.28.) 개인운영시설 법인기준 완화가 탈시설정책? 경기도 토론회 반발속 무산
- 비마이뉴스(2020.5.29.) 장애인 사망한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시설과 ‘한지붕 아래’에 있다
- 장애인뉴스(2019.8.12.)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부록

〈부록 1〉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1)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표는 저희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와 협조하여 수행하는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를 위하여 제작, 배포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운영주체가 개인인 장애인생활시설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리라 생각되지만, 조사표 내용을 읽어보시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 05

● 문의

경기복지재단 유정원 연구위원(031-267-9363, voiced@ggwf.or.kr)

경기복지재단 강보민 연구원(031-267-9377, kbom@ggwf.or.kr)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반현황

1. 시설 일반현황

시설명		시설 신고일	년 월 일
이용인 인원 (‘22.5월 현재)	현원(명)/정원(명)	시설 개소일	년 월 일
운영주체	<input type="checkbox"/> ① 법인 () <input type="checkbox"/> ② 개인 () <input type="checkbox"/> ③ 종교기관 <input type="checkbox"/> ④ 임의단체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시설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중증장애인시설 <input type="checkbox"/> ② 시각장애인시설 <input type="checkbox"/> ③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④ 지적장애인시설 <input type="checkbox"/> ⑤ 지체장애인시설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운영형태	<input type="checkbox"/> ① 실비시설 <input type="checkbox"/> ② 무료시설		
시설보유차량	<input type="checkbox"/> 있음(보유대수: 대)		
	<input type="checkbox"/> 있음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시설구조 및 규모

시설면적	대지면적(m ²) / 연면적(m ²)	
시설 소유형태 (‘22.5월 현재)	<input type="checkbox"/> ① 자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허가여부: <input type="checkbox"/> 허가 <input type="checkbox"/> 무허가</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 기입 (지하, 1층, 2층, 3층 이상)</div>	<input type="checkbox"/> ④ 건물 일부 임대(전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전세보증금 : ()만원</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 기입 (지하, 1층, 2층, 3층 이상)</div>
	<input type="checkbox"/> ② 건물 전체 임대(전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전세보증금: ()만원</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 기입 (지하, 1층, 2층, 3층 이상)</div>	<input type="checkbox"/> ⑤ 건물 일부 임대(월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전세보증금: ()만원</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 기입 (지하, 1층, 2층, 3층 이상)</div>
	<input type="checkbox"/> ③ 건물 전체 임대(월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월세보증금: ()만원</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월 지급액: ()만원</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 기입 (지하, 1층, 2층, 3층 이상)</div>	<input type="checkbox"/> ⑥ 무상대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 기입 (지하, 1층, 2층, 3층 이상)</div>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 기입 (지하, 1층, 2층, 3층 이상)</div>

6-1. 지원받을 경우, 어떤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 ①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 ②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③ 희망(공공)근로참여자
 ④ 자원봉사자 ⑤ 복지일자리 ⑥ 기타()

6-2. 지원받지 않을 경우, 지원받고 싶은 인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 ②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③ 희망(공공)근로참여자
 ④ 자원봉사자 ⑤ 복지일자리 ⑥ 기타()

7. 귀 시설 직원(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급여 현실화
 ②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등 보수교육
 ③ 타 시·도 시설을 방문 견학, 비교 벤치마킹 기회 제공
 ④ 기타()

8. 시설관리 및 행정현황

운영위원회	운영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실제 수행 역할	운영위원회가 있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① 시설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수정 <input type="checkbox"/> ② 시설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관리 <input type="checkbox"/> ③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평가 <input type="checkbox"/> ④ 재정적 지원 및 자원 발굴 <input type="checkbox"/> ⑤ 인적자원 개발 및 인사관리 <input type="checkbox"/> ⑥ 지역사회 자원개발(지역사회 협력사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개최 시기	<input type="checkbox"/> ① 매월 <input type="checkbox"/> ② 분기별 <input type="checkbox"/> ③ 6개월 <input type="checkbox"/> ④ 1년 <input type="checkbox"/> ⑤ 비정기적
운영위원회 외 독립된 지원기구 운영현황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있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① 이사회 <input type="checkbox"/> ② 인사위원회 <input type="checkbox"/> ③ 자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④ 입소판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⑤ 후원회 <input type="checkbox"/> ⑥ 이용인 보호자 모임 <input type="checkbox"/> ⑦ 인권지킴이단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관리장부 보유현황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직원관계철 <input type="checkbox"/> ② 회의록철 <input type="checkbox"/> ③ 사업일지 <input type="checkbox"/> ④ 내부기안 문서철 <input type="checkbox"/> ⑤ 문서접수·발송대장 <input type="checkbox"/> ⑥ 차량 운행일지 <input type="checkbox"/> ⑦ 후원자명부 <input type="checkbox"/> ⑧ 시설안전점검일지 <input type="checkbox"/> ⑨ 근무상황부 <input type="checkbox"/> ⑩ 이용인 입퇴소자 명부 <input type="checkbox"/> ⑪ 종사자 입퇴소자 명부 <input type="checkbox"/> ⑫ 기타()	
재무·회계장부 보유현황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input type="checkbox"/> ②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③ 예산서 및 결산서 <input type="checkbox"/> ④ 비품수불대장 <input type="checkbox"/> ⑤ 비품(장비)대장 <input type="checkbox"/> ⑥ 이용인 비용부담 관계서류 <input type="checkbox"/> ⑦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⑧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관리 대장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이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용함 <input type="checkbox"/> 이용하지 않음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input type="checkbox"/> ①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input type="checkbox"/> ② 우리 시설에 필요하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③ 있는지 몰라서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시설장 대외활동 현황	지역사회 내 활동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있을 경우, 단체와 직위 기입 (예시, 00초등학교 운영위원회장) () ()
	타 사회복지시 설 운영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있을 경우, 지역(시·군·구), 시설종류, 시설명 기입 (예시, 화성시, 정신보건시설, 000의 집) () ()
안전관련 보험가입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사고배상책임보험 <input type="checkbox"/> ② 화재보험 <input type="checkbox"/> ③ 가스보험 <input type="checkbox"/> ④ 차량보험 <input type="checkbox"/> ⑤ 가입한 보험 없음 <input type="checkbox"/> ⑥ 상해보험 <input type="checkbox"/> ⑦ 종합보험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안전설비 설치현황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소화전 <input type="checkbox"/> ② 스프링클러 <input type="checkbox"/> ③ 완강기 <input type="checkbox"/> ④ 소화기 <input type="checkbox"/> ⑤ 비상구 <input type="checkbox"/> ⑥ 방범창 <input type="checkbox"/> ⑦ 방화문 <input type="checkbox"/> ⑧ 배연창 <input type="checkbox"/> ⑨ 방화셔터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II. 재정

1. 다음은 귀 시설의 수입·세출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연간 총 수입(2021년 기준)

항목	총 수입	보조금			일반수급자 수급비
		국비	도비	시·군비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항목	시설자체부담금 (자부담)	이용인 월 이용료	후원금	기타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총 수입은 보조금, 시설자체부담금, 이용인부담금, 후원금, 기타의 합과 같아야 함.

1-2. 연간 총 세출(2021년 기준)

항목	총 지출	인건비	프로그램비	식비	전기요금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항목	수도요금	냉난방비	의료비	교육비	예비비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항목	기능보강비 *시설 개·보수비포함	보험료	차량유지비 *기름값·보험료·수리비	여비	기타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총 지출은 위의 모든 비용의 합과 같아야 함.

1-3. 귀 시설은 수급비를 인건비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귀 시설은 이용인에게 입소보증금을 받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입소보증금은 얼마입니까? (기준 : 1년 이용료)

()원

1-6 입소보증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1-7 귀 시설은 입소후원금을 받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8. 입소후원금은 얼마입니까?

()원

1-9. 입소후원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2. 아래 제시된 문항을 읽고 그에 따른 답변을 골라 V 표시 하십시오

항목	지표	내용	예	아니오
재정 운영	재정운용	귀 시설은 연간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이용인 월 이용료, 후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월금 등 포함)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	귀 시설은 직원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직접 비용을 청구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계규정	귀 시설은 회계규정을 갖추고 있습니까?		
		귀 시설은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감사	귀 시설은 연간 세입항목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회계 투명성	귀 시설은 통장정리, 후원금·금품관리 등의 회계처리를 공식적 절차에 의해 처리합니까?		
	후원금·금품관리	귀 시설은 후원금·금품의 총액과 사용처를 월1회이상 공개(홈페이지, 소식지)하고 있습니까?		
귀 시설은 이용인 개인별 수령액을 연 1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보를 하십니까?				
후원자 관리	후원자 관리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까?			

3. 귀 시설은 시설운영을 위한 현재 예산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4번으로) ② 충분(☞4번으로) ③ 보통(☞4번으로)
 ④ 부족(☞3-1번으로) ⑤ 매우 부족(☞3-1 번으로)

3-1.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부지원이 부족해서
 ② 후원금이 부족해서
 ③ 이용인 월 이용료가 적어서
 ④ 시설자체부담금이 부족해서
 ⑤ 기타()

3-2.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떤 재정수입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비 ② 도비 ③ 시·군비 ④ 민간단체 지원금 ⑤ 기부금/후원금
 ⑥ 이용인 월 이용료 ⑦ 이용인 입소보증금 ⑧ 기타()

4. 귀 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받아야 할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 ① 인건비 지원 ② 사업(프로그램)비 지원
 ③ 식비 지원 ④ 수도 및 전기요금 지원
 ⑤ 냉난방비 지원 ⑥ 의료비 지원
 ⑦ 교육비 지원 ⑧ 기타()

5. 귀 시설의 이용인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이용료로 대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 ① 예(☞5-1번으로) ② 아니오(☞6번으로)

5-1. 기초생활수급비를 이용료로 대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용인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입·출금 관리는 누가합니까?

- ① 이용인 본인 ② 생활지도원 ③ 시설장 ④ 후원자
 ⑤ 기타()

6. 운영예산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군과 시설 각각에서 필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여 주십시오.

시·군	시설
1.	1.
2.	2.
3.	3.
4.	4.
5.	5.

Ⅲ. 이용인 현황- 별지작성

IV.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귀 시설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별로 해당하는 운영주체에 표시하시고, 그 프로그램에 사용된(될) 비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프로그램		프로그램운영주체						비용**	
		본시설			외부기관*			2021년 사용액	2022년 예정액
		인 력	장 소	예 산	인 력	장 소	예 산		
예시		○	○				○	60만원	100만원
보호 서비스	단순 수용보호								
진단 판정	접수상담								
	진단								
	판정								
	통보								
의료 재활	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수중재활								
	재활보조기구사용								
	의료 재활상담								
기타()									
취업 지원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준비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기타()								

프로그램		프로그램운영주체						비용**	
		본시설			외부기관*			2021년 사용액	2022년 예정액
		인 력	장 소	예 산	인 력	장 소	예 산		
사회심리 재활	재활상담								
	심리상담								
	심리치료								
	원가족 방문								
	사회적응훈련								
	자조집단								
	결혼상담								
	기타()								
지역 복지	사례관리								
	재가복지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사업								
	결연사업								
	지역사회조직								
	지역자원활용								
	기타()								
기타 서비스	생활체육								
	원예치료								
	기타								
본 시설*** 프로그램									

* 외부기관(시설 밖 기관) **비용(예산 상 금액) ***본 시설 프로그램 (시설 자체 실시 프로그램)

2. 귀 시설은 시설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서비스 제공 및 사업계획 포함) 또는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① 세우고 있다(☞3번으로) ② 세우지 않고 있다(☞2-1번으로)

2-1.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③ 계획을 세울 여력 없다
 ④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
 ⑤ 기타()

3. 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전문인력부족 ② 재정부족 ③ 시설 및 장비의 미흡
 ④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⑤ 자체 프로그램 부재 ⑥ 홍보문제
 ⑦ 자원봉사자의 부족 ⑧ 지역사회의 이해부족
 ⑨ 유관기관과 연계부족 ⑩ 지역주민 비협조

4. 귀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내서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구비 여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유	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22년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2022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							
기타()							

V. 보건의료

1. 귀 시설에서 이용인과 시설종사자에게 2021년 기준 보건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보건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
대상	이용인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실시한 교육 내용 <input type="checkbox"/> ①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input type="checkbox"/> ② 성교육 <input type="checkbox"/> ③ 세면·목욕 <input type="checkbox"/> ④ 옷 갈아입기 <input type="checkbox"/> ⑤ 화장실 사용하기 <input type="checkbox"/> ⑥ 식사하기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미실시 사유 <input type="checkbox"/> ①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계획을 세울 여력 없다 <input type="checkbox"/> ④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실시한 교육 내용 <input type="checkbox"/>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규정준수 <input type="checkbox"/> ② 이용인 생활 청결유지 방법 <input type="checkbox"/> ③ 개인 청결유지 방법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미실시 사유 <input type="checkbox"/> ①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계획을 세울 여력 없다 <input type="checkbox"/> ④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2. 2021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활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재활 보조기구	지원 여부와 내용	
		<input type="checkbox"/> ① 지원 받았다 기구명: (모두 기재)	<input type="checkbox"/> ② 지원 받지 않았다
구분	재활 보조기구 설치 사업비	<input type="checkbox"/> ① 지원 받았다 금액: (총액)	<input type="checkbox"/> ② 지원 받지 않았다

3. 귀 시설은 이용인을 대상으로 정기(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실시하고 있다(☞다음페이지로)
- ② 실시하지 않고 있다(☞3-1번으로)

3-1.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 내 연계 병원이 없어서
- ② 지원 인력이 부족
- ③ 필요하지 않아서
- ④ 예산이 부족
- ⑤ 이용인의 장애로 인해 건강검진 진행이 불가능
- ⑥ 기타()

VI. 지역사회관계

1. 귀 시설은 지역사회 내 특정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래의 표에 연계여부와 이용횟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021년 기준)

지역사회 내 기관	연계기관	연간 이용횟수
	<input type="checkbox"/> ①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② 병원		연()회
<input type="checkbox"/> ③ 자원봉사센터		연()회
<input type="checkbox"/> ④ 장애인복지관		연()회
<input type="checkbox"/> ⑤ 경찰서(파출소)		연()회
<input type="checkbox"/> ⑥ 도서관		연()회
<input type="checkbox"/> ⑦ 문화시설(박물관, 공연장 등)		연()회
<input type="checkbox"/> ⑧ 체육시설		연()회
<input type="checkbox"/> ⑨ 교육정보센터		연()회
<input type="checkbox"/> ⑩ 근린공원		연()회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기관명:)		연()회
기타(기관명:)		연()회
기타(기관명:)		연()회

**연계 : 귀 시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며 인력, 장소, 예산 등에서 귀 시설에 편의를 제공함(지침참조)

2. 귀 시설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자 유무 및 인원(2022년 5월 현재)	
<input type="checkbox"/> ① 자원봉사자 있음	명
<input type="checkbox"/> ② 자원봉사자 없음	

3. 주로 어떤 일에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 ① 식사보조 ② 세탁 ③ 청소 ④ 이·미용 ⑤ 목욕
 ⑥ 외출 및 야외활동 보조 ⑦ 의사소통 보조 ⑧ 치료봉사
 ⑨ 상담봉사 ⑩ 환경개선봉사(시설보수)

Ⅶ.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

1. 현재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정책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2번으로) ② 만족(☞2번으로) ③ 보통(☞2번으로)
 ④ 불만족(☞1-1번으로) ⑤ 매우 불만족(☞1-1 번으로)

1-1. 현재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정책에 불만족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
 ② 장애인생활시설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③ 법인시설과의 정책적 차별
 ④ 운영주체가 개인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조항이 없어서
 ⑤ 장애인생활시설과 정부와의 의사소통 부재
 ⑥ 운영주체가 개인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한 불편
 ⑦ 기타()

2. 귀 시설은 시설 및 시설 종사자 등의 법적기준을 갖추었습니까?

- ① 예(☞3번으로) ② 아니오(☞2-1번으로)

2-1. 귀 시설이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설비기준 ② 종사자확보 ③ 시설장 자격기준
 ④ 입소 기준 ⑤ 기타()

3.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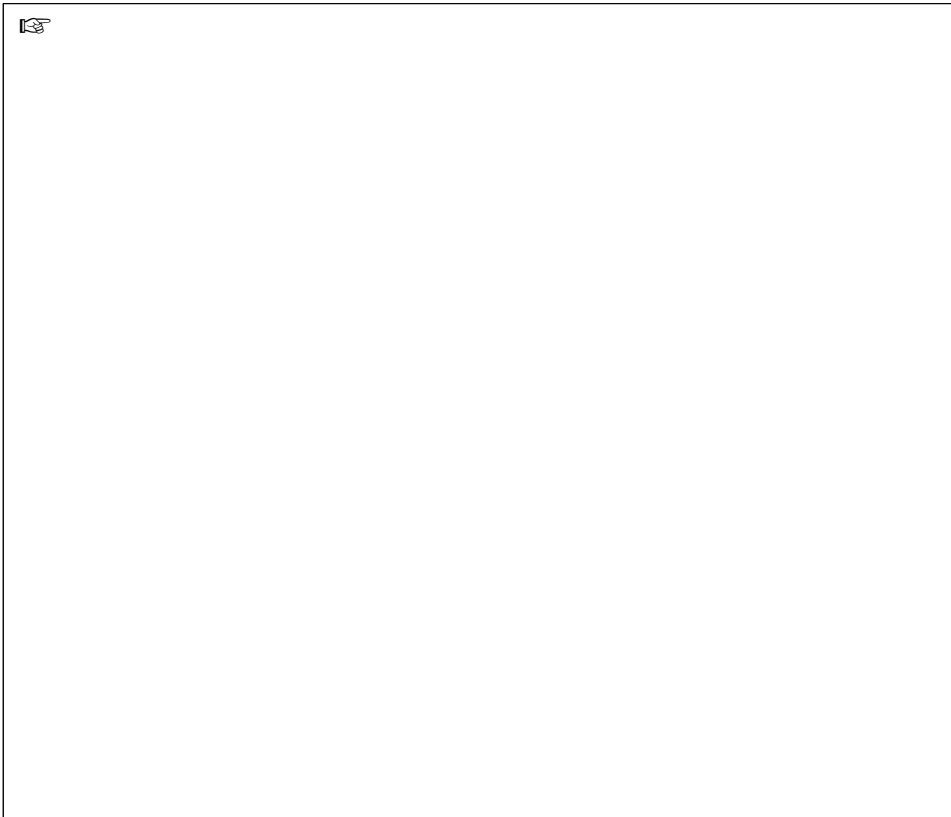
- ① 예(☞3-1번으로) ② 아니오(☞4번으로)

3-1. 시설장들을 위한 교육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운영방법 ② 회계 ③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④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 ⑤ 기타()

4. 운영주체가 개인인 장애인생활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예시) 시설 내 의료인력 상시근무, 필요한 의료장비 및약품확보, 관내 보건소 및 병원과의 의협약체결 및 진료,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건강관리를 위한 자원확보, 인건비 지원 필요, 인력 충원과 구체적 방안, 이용인과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확대 등



〈부록 2〉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II) 직원 및 이용인 현황 조사표

다음의 조사표들은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와 협조하여 수행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하여 신고를 마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의 상황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사표에 포함된 내용은 ① 시설의 직원(종사자 현황) ② 직원(종사자)교육현황 ③ 이용인 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리라 생각되지만, 조사표 내용과 작성방법을 읽어보시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5

조사주관기관 : 경기복지재단

조사협조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및 연락처

유정원 연구위원 031-267-9363, voiced@ggwf.or.kr

강보민 연구원 031-267-9377 kbom@ggwf.or.kr

1. 직원(종사자)현황-2022년 5월 현재 기준

현원(명)/정원(명)

구분	직위	이름	성별		연령 (만)	시설 내 주요 담당업무	시설장 친인척여부		근무 유형			근무 기간	관련 자격증 여부		관련 자격증 (급수 기입)	급여 지급	
			남	여			예	아니오	상근	비 상 근	상주		유	무		유급	무급
예시	총무	홍길동	√		42	예산운영 및 관리 총괄 출납 및 회계처리 총괄	√		√			2년 3개월	√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	
1	시설장 (1순위 기입)																
2																	
3																	
4																	
5																	

◇ 작성 시 주의사항

1. 시설장을 1순위로 기입함.
2. 시설 내 주요 담당업무 : 주요 담당업무를 2개 이내로 기입함.
3. 친인척 여부 : 친인척의 범위는 민법 77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오니, 다음의 범위에 해당되는 직원일 경우 친인척으로 간주함.

구분	내용 및 예시
8촌 이내의 혈족	남자 시설장을 기준으로 할 때, 시설장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여자 시설장을 기준으로 할 때, 시설장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인척	시설장 배우자의 혈족을 의미하며, 남자 시설장을 기준으로 할 때, 장인, 장모, 처남, 처형, 처제 여자 시설장을 기준으로 할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배우자	남자 시설장을 기준으로 할 때, 처남댁(처남의 아내), 동서(처형이나 처제의 남편) 여자 시설장을 기준으로 할 때, 시누이의 남편, 동서(남편의 형수나 제수)

4. **근무유형** : 상근이란, 휴일을 제외하여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 계획 하에 매일 일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함. 즉, 상근은 시간대 상관없으나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상근으로 인정하며, **비상근**은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주 40시간이내 근무하는 자를 의미함. **상주**는 시설에 기거하며 이용인들과 거주하는지 여부를 의미함.
5. **근무기간** : 해당직원의 입사일로부터 '22년. 5월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을 의미함. 한번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직원일 경우, 가장 최근에 입사한 날로부터 '22년.5월 현재까지로 산정함.
6. **관련자격증** : 관련자격증이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법적 자격기준에 의해 취득한 자격증만을 의미함. 그 외 사설학원, 협회, 협의회 등을 통해 취득한 임의자격증은 포함하지 않음
7. **관련자격증**: 위 기준에 적합한 관련자격증의 이름과 급수를 정확히 기입함.
8. **급여지급**: '22년.4월 현재 급여지급 여부를 기입함.

2. 직원(종사자) 교육현황-2021년 말 기준

직위	교육 기간	교육방법			교육주관 기관명	교육비 유무		교육비 부담자
		온라인 (사이버)	오프라인 (집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유	무	
예시 총무	4시간		√		경기복지 재단			<input type="checkbox"/> ① 전액시설부담 <input type="checkbox"/> ② 전액본인부담 <input type="checkbox"/> ③ 시설과 본인 일정금액 공동부담 <input type="checkbox"/> ④ 무료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2시간	√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input type="checkbox"/> ① 전액시설부담 <input type="checkbox"/> ② 전액본인부담 <input type="checkbox"/> ③ 시설과 본인 일정금액 공동부담 <input type="checkbox"/> ④ 무료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시설장 (1순위기입)	시간							<input type="checkbox"/> ① 전액시설부담 <input type="checkbox"/> ② 전액본인부담 <input type="checkbox"/> ③ 시설과 본인 일정금액 공동부담 <input type="checkbox"/> ④ 무료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시간							<input type="checkbox"/> ① 전액시설부담 <input type="checkbox"/> ② 전액본인부담 <input type="checkbox"/> ③ 시설과 본인 일정금액 공동부담 <input type="checkbox"/> ④ 무료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시간							<input type="checkbox"/> ① 전액시설부담 <input type="checkbox"/> ② 전액본인부담 <input type="checkbox"/> ③ 시설과 본인 일정금액 공동부담 <input type="checkbox"/> ④ 무료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시간							<input type="checkbox"/> ① 전액시설부담 <input type="checkbox"/> ② 전액본인부담 <input type="checkbox"/> ③ 시설과 본인 일정금액 공동부담 <input type="checkbox"/> ④ 무료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작성 시 주의사항

1. 시설장을 1순위로 기입함.
2. 직원 당 2021년 한 해 동안(2021.1.1.~2021.12.31.) 받은 교육 중 외부교육만을 기입하며, 외부교육에 해당하는 모두를 기입함.

구분	내용
내부교육	시설장 및 시설의 직원 중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시설 내 직원을 상대로 교육한 경우로 <u>예산, 장소, 인력</u> 모두 시설 내 자원으로 해결된 경우를 의미함.
외부교육	외부기관에서 주체하는 교육에 시설의 직원이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교육장소(시설내부이든 시설외부이든)는 상관없으며, 교육내용과 교육강사의 주체가 외부인 경우를 외부교육으로 간주함. 예를 들어, 보건(성)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의 직원을 상대로 교육한 경우, 외부교육에 해당함.

3. **교육기간** : 교육받은 총 시간을 기입함.
4. **교육방법** : 인터넷 원격교육은 온라인이며, 어느 장소에 여러 사람이 집합하여 받은 교육은 오프라인임. 하나의 교육에서 이 두가지 방법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에 체크함.
5. **교육주관 기관명** : 교육을 주관한 기관명을 기입함.
6. **교육비 부담 유무** : 교육의 교육비 여부를 체크함.
7. **교육비 부담자** : 교육비가 있을 경우, 누가 부담하였는지 체크함. 교육비가 없는 교육이었을 경우에는 무료에 체크함.

3. 이용인 현황-2022년 5월 현재 기준

구분	성별		연령 (만)	입소기간	입소경로 (작성지침 참조)	보호자유무 (시설장 외 법정대리인)		기초생활 수급자여부		장애유형 (작성 지침 참조)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이용인 월 부담금
	남	여				있음	없음	예	아니오			등록	미등록	
예시	√		42	1년8개월	④	√			√	①	②	√		20만원
1														
2														
3														
4														
5														

◇ 작성 시 주의사항

1. **연령** : 각 이용인의 만 나이 기재함.
2. **입소기간** : 각 이용인이 입소한 날로부터 2022년 5월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함.
3. **입소경로** : 각 이용인이 귀 시설에 입소하게 된 절차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함.
①본인(가족) 스스로 찾아옴 ②시설에서 발굴 ③복지시설로부터 의뢰 ④동사무소, 구청 등 관공서로부터 의뢰
⑤시설 이용인(가족)의 소개로 ⑥기타
4. **입소 전 거주지** : 각 이용인이 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하던 곳의 상세한 주소를 기재함.
5. **보호자 유무** : 이용인의 법정 대리인 = 민법 제932조에 의한 법정후견인(3촌 이내 방계혈족(아버지의 형제)에 해당)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함.
시설장이 법정 대리인인 경우는 보호자 **없음**에 해당됨.
6.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 이용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여부를 말함.
7. **장애유형** : 각 이용인이 해당되는 장애유형 번호를 기재함.
①지체장애 ②뇌병변 ③시각장애 ④청각장애 ⑤언어장애 ⑥지적장애 ⑦자폐성장애 ⑧중복장애 ⑨비장애인
8. **장애정도** : 각 이용인의 장애정도를 번호로 기재함.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등급)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등급)
9. **장애인 등록여부** : 각 이용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함.
10. **이용인 월 부담금** : 각 이용인이 부담하는 월 이용료를 기재함.
시설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이용료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함.
무료로 생활하는 경우 **무료**로 기재함.